

2018 Vol. 19



KACPA

공인회계사

# KACPA Journal

Korean-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 대출에 **테크닉**을 더하다

비즈니스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장의 테크닉 -

### 한미 익스프레스론

운영 자금, 장비 구매 및 스몰 비즈니스 관련 대출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  
한미 익스프레스론과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 보세요

## 한미 익스프레스론

- 유일하다 : 한인은행 최초 온라인 대출 서비스
- 편리하다 : 온라인으로 손쉽게 편리하게 대출 신청
- 언제나 : 365/24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빠르다 : 최대 25만불까지 신속하게 대출심사 가능

hanmi.com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 KACPA Journal Vol. 19 2018

**Korean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www.kacpa.org](http://www.kacpa.org)

**05**  
인사말  
Ann H. Lee 회장

**06**  
한인사회의 도약을 위한  
공인회계사협회의 숙제  
JACK CHOI (UNITI BANK)

**09**  
추징세금 억울하면 Appeal 망설이지 마라!  
인병찬 공인회계사

**10**  
Cost Segregation을 통한  
합법적인 세금절세 전략방법  
Phillip Son 공인회계사

**12**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  
김상훈 변호사

**14**  
대학 학자금 어떻게 신청하나  
Andrew Kang 공인회계사

**16**  
Decanting the Irrevocable Trust:  
The magic "reset" button.  
Alex Lee 변호사

**17**  
밀린세금 협상  
신선향 공인회계사

**19**  
부동산관련 세법  
박유진 변호사

**21**  
외국 부동산에 투자시  
알아야 할 미국세법  
조한욱 공인회계사

**22**  
Nuances of Business Tax Credits  
Charles Lee 공인회계사

**24**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업 제공의무  
김해원 변호사

**26**  
오바마케어와 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가입기간  
Eugene Kim (Cal-Kor Insurance Services)

**28**  
Premium Financing Program  
Linda Han (National Life Group)

**29**  
임대수입이 있는 S Corp의 딜레마  
전석호 공인회계사

**30**  
외국법인의 미국 파트너십투자  
와 관련한 세무이슈들  
Johnny Jeong 공인회계사

**32**  
Rate of Return  
Daniel M. Choi, Wealth Management Advisor

**34**  
Employment Law  
Soo Park 변호사

**36**  
종업원 상해보험의 이해  
Andy Kang (IBE Insurance)

**38**  
The Loan Process Demystified  
Patti Handy, Mortgage Advisor

**39**  
은퇴계획에서 인덱스 연금활용  
Grace Kang (Amstar Advisors)

**40**  
Leadership  
Kenny Ahn, Human Resources Specialist

**43**  
트럼프 세제 개혁안  
Ann H. Lee 공인회계사

**44**  
2017-2018 KACPA Business Events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46**  
KACPA Board of Directors List  
2017-2018

**47**  
제 35대 신임 회장단

**48**  
KACPA 활동사진



## SBA Financing- SBA 7(a) Loan Program

Centerstone offers a variety of loan programs to meet your needs. SBA 7(a) offers a wide variety of financing options with loan amount up to \$5MM.

### Benefits

- Up to 90% financing for qualified applicants
- Fully amortized loans, no balloon payments

### Loan Amount

- Up to \$5MM

### Provides Funds for

- Real Estate Purchase/ Refinance
- Business Acquisition
- Expansion
- Partner Buy-out
- Debt Refinance
- Inventory Purchase
- Equipment or Machinery Purchase
- Working Capital

### Terms

- Range from 7-25 years
- Fully amortized for the life of the loan
- No balloon payments



### CENTERSTONE

777 S Figueroa St, Suite 1900  
Los Angeles, CA 90017  
213.805.5220  
[www.teamcenterstone.com](http://www.teamcenterstone.com)

# 인사말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의 연간 저널, "공인회계사"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1982년에 설립되어 35주년을 맞은 저희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의 제19권째 저널을 발행하며, 그동안 저희 협회가 한인사회의 회계 전문가 모범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 주신 교민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스폰서 단체 여러분, 또한 같은 길을 걸어 온 선후배 및 동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인 미국에서 회계 및 세무 정보는 일상 생활의 일부이며, 늘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교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나눔으로써 경제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며, 또한 발생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 "공인회계사"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9권의 저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주신 Publication Director의 Charles Lee 그리고 Sun Hyang Shin 회계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Greeting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nnual KACPA Journal, "공인회계사", issued by Korean-Americ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KACPA), which has been celebrating its 35th anniversary since its inception in 1982.

In publishing the 19th edition of KACPA Journ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Korean-American community members, who have been with us and witnessed our growth of being one of the most exemplary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Korean community; to those sponsoring organizations who have been supporting us with their generous contribution; and to all KACPA members in the same path for their interest and cooperation.

The accounting and tax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representative of capitalism, is a part of everyday life and in a process of constant change. So KACPA Journal has been published with goals of sharing the new information, not only with the professionals but also with the Korean-Americans community members, to lead the readers into the right directio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problems, and solving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ir economic life. I hope this KACPA Journal can come to you with some practical help, and I also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participation so that KACPA Journal "공인회계사" can grow further and advance.

My special thanks extend to the Publication Directors, Charles Lee, CPA and Sun Hyang Shin, CPA for their countless time and effort to make this 19th edition possible.

### 앤 리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회장

Ann H. Lee President  
Korean - American CPA Society of Southern California



**JACK CHOI**  
(UNITI BANK)

# 한인사회의 도약을 위한 공인회계사협회의 숙제

한인 이민역사는 한세기를 넘었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80년대를 기준으로 보아도 거의 40년 가까이 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인 이민역사 기간중에서 한인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자부할 만하다. 공식적 통계는 없어도 80년대초 한인 최초의 은행들이 생겼을 때와 비교해보자면, 은행규모를 기준으로 약 150배 정도 성장했다고 추산할 수 있으니 이는 실로 대단한 성취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본격적으로 이민이 성장하는 80년대의 수많은 초기 이민 1세대들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보여준 의지와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긴 노동시간을 마다하지 않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도 않았다. 거기에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함이 더해져 타이민사회가 이루지 못한 부를 만들어 내었다.

단계별로 보자면 리카, 마켓, 세탁소, 청소, 봉제 등의 노동중심의 사업으로 기초자본을 만들어 낸 초기부터, 무역과 의류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확대해 나간 2기가 있었고, 여기서 형성된 자본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3기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는 한인은행권의 주요 고객의 흐름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80년대는 소매업 중심의 대출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이후 무역업과 의류업이 커져 나갔으며, 90년대부터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이민 1세대의 성공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주류로의 승격을 하느냐의 도전인데, 그 중에서 경제적 전환에는 부의 승계와 상장기업의 배출이라는 두가지 주요 숙제가 있고 이 도약에는 CPA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우선, 부의 승계는 개인과 기업의 두 부문이 있는데, 그 중 개인부문은 많은 분들이 세법전문회계사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문제는 기업부문인데 1세대분들이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 소규모사업체는 자식에게 물려 주거나, 마땅한 자식이 없으면 매각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기업규모가 크고 경영이 복잡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자식에게 물려 주려고 해도 경영수업을 오래 해야 하고, 또 적성에 맞지 않기도 해서 물려 주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업을 매각해야 할 경우, 구매자에게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와 세금자료가 필수적이다. 또한, 매각 이후 새 경영진이 들어왔을 때 순조로운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회계, 세금, 내부관리의 세가지 필수사항은 기업주와 담당 CPA의 공동 의식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 세 부분은 이민 1세 기업주에게 취약한 부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세부분이 투명해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회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실재자산규모와 이익을 믿기가 어렵고, 세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잠재적 세무감사의 위험이 있으며, 내부관리에 헛점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투자자는 이 잠재적 위험만큼 가격을 할인할 수 밖에 없어서, 매각자의 가치와 큰 괴리감을 초래하기에 성공적인 거래의 성사가 어려워진다. 이 문제가 좀 더 확대되면, 두번째 도전목표인 상장기업배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부의 승계 방법 중 가장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투자금을 주식시장에서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상장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회계, 세금, 내부관리의 세가



지 부분이 더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역할은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다. 한인 1세대들이 만들어낸 기업가치를 제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이민사회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중요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기업주 스스로 상기의 세가지 부분의 발전을 위해 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주요조인자로서 회계사의 유도는 필수적이다.

은행권의 노력으로 기업가치도 많이 상승하였으나, 상장이나 비상장사의 장외거래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세부분에서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감독규제가 강한 산업인 관계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회계와 세금, 내부관리가 강하지 못 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관리 되었으며, 그 결과 이익과 배당이라는 1차적 혜택뿐만 아니라, 상장이라는 과정에서 투자가치가 인정 되고 거래도 쉽게 되는 2차적 혜택도 보게 되었다.

이제 비은행권의 기업가치의 승계와 상장이라는 숙제는우리 사회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숙제이다. 여기에서 한인공인회계사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숙제가 있다.

첫째, 협회차원에서 이 부의 보전과 승계에 대한 인식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당장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투명하고 잘 짜여진 관리체계는 승계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자주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인식을 가진 고객이 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이를 수행해 줄 회계, 시스템, 법률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은 회계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한인사회에도 기업가치상정과 상장을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생겨야 한다. 지금도 우리 협회안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면 인젠가 빅4와 같은 대형회계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동반 성장이 있어야 한다. 어렵잡아 40년 동안 이루어낸 우리의 부를 잘 이어나가, 소수민족사회로 남지 않고 당당한 주류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경제를 잘 뒷받침해 왔던 공인회계사협회가 새로운 도전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안으로는 공인회계사협회를 만들어 수많은 회계사를 이끌어 준 선배원로회계사님들의 헌신적 봉사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인경제에 기여해 주신 공인회계사협회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앞장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Uniti SBA**  
Bank



Our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banking professionals will

**come to you.**

Need some help to start or expand your business?  
Take your first step by meeting with our professional and skilled banker, and the best solution will be provided.



**Jay Park**  
SVP & Relationship Manager  
experience: 10 years  
(213) 401-3213



**Christina Ahn**  
SVP & SBA Manager  
experience: 15 years  
(213) 401-3205



**Stacey Lee**  
FVP & SBA Operations Manager  
experience: 25 years  
(213) 401-3209



**Prakash Ajwani**  
SVP & CLC 1 Manager  
experience: 38 years  
(562) 881-6566



**Chris Chong**  
FVP & L.A. Branch Manager  
experience: 20 years  
(213) 401-3255



**Michelle Kwon**  
SVP & Garden Grove Manager  
experience: 20 years  
(714) 735-3698



**Ngoc-Tinh Nguyen**  
FVP & Relationship Manager  
experience: 17 years  
(714) 735-3699



**Stella Min**  
FVP & Buena Park Manager  
experience: 12 years  
(714) 736-5715

**Uniti Bank SBA is very different if compared more.**

- Prepare the best solution with various options of loan to find the best possibility
- Approval of SBA loan as PLP Lender up to 5 million dollars
- Quick decision is made in 24 hours.
- Consultation available by visiting onsite, phone, and online

**Experience is power.**

**SBA Loan Consultation and Questions: 213-401-3222**

Where the Solution Is!

**unitibank**

www.unitibank.com



대한민국 투자 1순위  
인천 '청라지구 정서진'  
**호텔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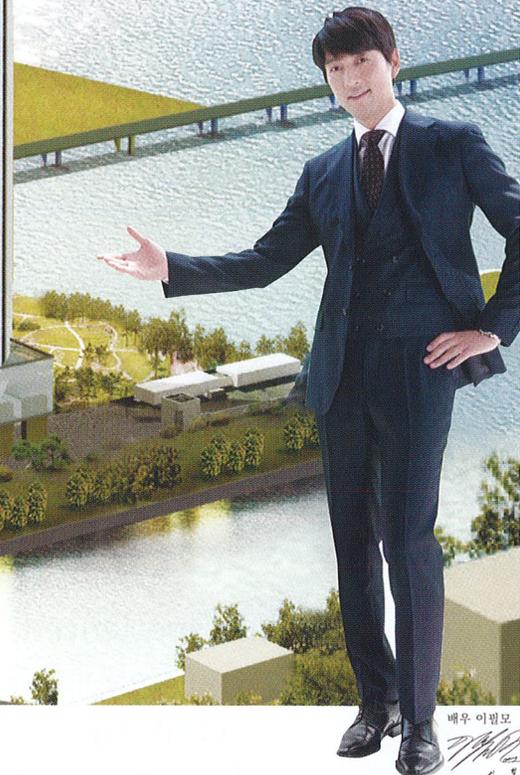
고국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모두 누리십시오.  
전문 운영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홍보관에 방문하셔서 가지는  
투자전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5년 7%**  
**확정수익 보장**  
한국 부동산 최초  
LA 홍보관(분양사무실) 오픈!  
자금관리사 아시아신탁



HOTEL  
**PUΣZ**

휴식마저 투자가 되는 곳 - 호텔퍼즈  
**수익형 호텔**



배우 이필모



호텔퍼즈는 대한민국에 없던 최상의 호텔로 전 객실에서 서해바다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낙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수익형 호텔 퍼즈 홍보관 / 분양사무실

**800-916-2431**

3785 Wilshire Blvd. #102A, LA, CA 90010

**"모든 AGENT와 함께합니다"**

Business Hours  
MON - SAT 10:00AM - 7:00PM  
SUN 12:00AM - 7:00PM



안병찬  
공인회계사

# 추징세금 억울하면 Appeal 망설이지 마라!

세무감사를 받다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다. 세무감사관의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로 인해서 납세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소득이 아닌데 세무감사관은 소득이라고, 분명히 비즈니스 경비인데 세무감사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나하나? 망설일 것 없이 Appeal (항소)을 해라.

## Appeal (항소) 이럴때 고려해라.

세무감사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무리 설명해도 감사관이 요구부동으로우리가 설명하고 제출하는 자료에 만족치 않고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요청들이 합리적인 수준일 경우에는 동의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서로 관이하게 다를 수 있다. 감사관과 일을 진행하면서, 일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감사관의 수퍼바이저 또는 매니저와 상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니저와 상의 했는데도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Appeal (항소) 이다. 즉, 감사관과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국세청 산하에 다른 기관에 호소해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 감사결과에 대한 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Appeal 일을 담당하는 Appeal Officer (항소 담당관) 들은 국세청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국세청 감사관들과는 별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케이스를 검토하게된다.

## Appeal 은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이 있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한다. 이것은 비단 납세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Appeal (항소)를 하기 전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유리한 점

- Appeal 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정이 빠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
- 감사관과 불일치 한 이슈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진다.
-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 고용없이 납세자 자신이 진행할 수도 있다.

- Appeal 을 신청하게되면, 이 기간동안 혹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독촉을 피할 수 있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을 수 있다.

## 불리한 점

- 추징세금에 대해Appeal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한다.
-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증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세무감사 기간이 Appeal 기간 만큼 더 늘어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늘어난다.



## Appeal은 국세청이 주는 선물

국세청 감사관들 중에는 Appeal Office(항소부서)에대한 불만으로 Appeal Office를 공공연하게 "Gift Shop" 으로 표현한다. 감사관들이 현장에서 납세자와 납세자의 감사를 대행해 주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납세자가 Appeal 을 하게되면Appeal office에서는50% 이상의 케이스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거나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Appeal Office에서 무조건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납세자가 제공하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드린다. 납세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직간접적인 증빙자료에 대한 준비없이 감정적으로 Appeal 을 하거나, 두서없이 주장하는 것들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Phillip Son  
 공인회계사

# Cost Segregation을 통한 합법적인 세금절세 전략방법



## 건물주와 세입자들...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 분리 연구는 건설 프로젝트 또는 자산(동산/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입니다. 비용 분리 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 또는 구매의 자본화된 비용으로 식별되는 모든 단기 수명 자산의 비용을 분리하고 문서화함으로써 가용 감가 상각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비용 분리 분석 또는 구매 가격 할당을 통한 고정 자산을 적절하게 감가 상각함으로써 연방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분리 분석은 건설 및 취득 비용을 분류하여 유형 개인 자산, 토지 개량 및 부동산과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 할당합니다.

비용 분리 연구의 결과로 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1,000달러의 자산이 장기 수명에서 보다 짧은 단기 수명 감가상각 카테고리로 재분류될 때마다 약 21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리 연구 없이는 건물의 총 비용에서 모든 개인 재산 및 토지 개량 비용과 간접 비용을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든 부동산은 39년 정액 감가상각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7.5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원가 분리 분석은 어떤 경우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 현재 진행 중인 건설
- 개/보수 공사
- 임대 시설 개량비
- 부동산 인수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점검

## 재건축, 신축 공사 또는 임대 시설 개량 작업 수행 시

MACRS(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시스템)에 따르면 건물의 건설 또는 개/보수 비용 중 상당 부분이 비용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하여 세금 절감 및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산정의 근거는 시공 문서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수량 조사 및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비용 분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자산의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사의 흔적을 남겨 줍니다.

## 기존 건물

적절하게 감가상각되지 않는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을 보유한 건물 소유자는 비용 분리 분석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존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감가 상각해야 하는지, 또 어떤 481(a) 조정을 해야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리 연구는 현행 조세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새로이 발견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IRS 서식 3115 - 회계 방법 변경 요청서 제출을 위한 참조 문서 역할을 합니다.

## 건물 구매시

기존 건물의 경우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최적의 비용 복구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 분리를 강조한 구매 비용 조사를 통해 가속 감가 상각 대상 품목의 비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조율

감가 상각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세법과 건축 설계 및 시공 문서의 조율은 신규 건설 또는 개/보수 프로젝트에서 현금 흐름 혜택을 창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비용 분리 전문가는 귀하의 프로젝트 팀이 고정 자산 가속 감가 상각에서 우세한 세금 절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자산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세금 절감 활용하기

우수한 비용 분리 연구는 연방 세제 혜택 활용 이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용 분리 연구를 통해 귀하가 보다 유리한 보험 가입액을 협상하거나 고정 자산 감가 상각 이상의 다른 재정, 세금 및 재산세 보고 문제와 관련된 재산 기록 회계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얻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례

**고층 멀티 테넌트 사무실 및 소매 센터 구매 :** 어느 국제 부동산 개발업자는 3억 2500만 달러에 구매한 44층, 멀티 테넌트 사무실 및 소매 센터의 세제 감가상각 분석을 위해 비용 분리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컨설턴트는 건물 시공 문서와 현장 노트를 사용하여 핵심 건물 건설과 임차인 임대 개선공사를 분리하여 가속화된 감가 상각비 대상 자산을 결정하여 360만 달러 이상의 순 현재 가치 세제 혜택을 얻었습니다.

**신규 스포츠 콤플렉스 분석 :** 한 개발업자는 125 에이커의 부지에 건설된 신규 스포츠 콤플렉스에 대한 세제 감가상각 분석을 위해 비용 분리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이 개발에는 27,000 석 스포츠 경기장, 8,000 석 테니스 경기장, 토너먼트 및 연습 테니스 코트, 연습장 및 스포츠 부상 재활 센터가 포함되었습니다. 비용 분리 컨설턴트는 분석을 위해 건설 비용 계획과 건설 도면을 확

보했습니다. 이 1 억 달러 프로젝트의 순 현재 가치 세금 절감액은 1,100 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2개의 신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분석 :** 비용 분리 컨설턴트들이 장소당 평균 230만 달러의 건설 비용이 들어간 22개의 신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기존 시공 문서 및 현장 방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순 현재 가치 절세 금액이 1백 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 혜택 분석

숙련된 비용 분리 전문가는 다음 정보 중 일부가 제공된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순 현재 가치 혜택 분석 및 제안된 비용 (초기분석) 을 대개는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 크기, 구성, 건설 유형 등
2. 손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세분화된 총 자본화 건설 비용. 이 정보는 AIA 문서 G702 / G703에 나와 있음.
3. 승인된 변경 주문 기록 사본
4. 프로젝트 이행 방법... 일반 건축 계약, 건축 관리자, 설계 구축, 기타 어떤 방법이었던가?
5. 프로젝트 가격 책정 방식... 최대 가격 보장, 원가 가산 방식 등
6. 프로젝트의 일부로 자본화될 간접 비용의 총 가치.
7. 계약업자를 통해 인도되지 않고 귀하가 직접 소유하는 건설 관련 계약의 가치
8. 이 프로젝트의 일부인 가구, 비품 및 장비의 감가 상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 연구의 일부로 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내에서 처리할 것인지, FF&E, 특수 장비 등의 가치는 무엇이며 총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감가 상각과 관련된 귀하의 납세 입장에 관한 모든 정보.
10. 총 자본화 된 프로젝트 비용 또는 토지와 건물간에 분배된 총 취득 비용 (인수의 경우).
11. 부지 계획 및 평면도 사본.
12. 다세대 건물의 경우 점유된 공간의 임차인 명부 또는 임대료 장부.
13. 대상 프로젝트의 주소와 위치.

## 결론

비용 분리 연구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IRS 감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추정 기법, 건설 방법, 수량 조사 및 분석 관련 세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비용 분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

## 유류분(Forced Share)이란?

미국은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피상속인(망인)이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원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도 특정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모두 줄 수 없다. 바로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중 장남에게 전 재산인 6억 원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들은 원래 자신들의 몫인 2억 원의 1/2인 1억원씩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증여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언제 증여를 했는지 간에 그 가액은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장남에게 당시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 부동산의 가액이 20억원이 되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장남이 20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7조). 여기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 이처럼 소멸시효기간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급적 빨리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가족간에 협

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안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한 길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신뢰'로 연결됩니다.  
'신뢰'는 변호사의 열정과 능력에서 나옵니다.  
바른 능력과 열정으로 뭉친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 바른의 법률서비스가 바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Barun Law Building, 92 gil 7,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06181  
Tel: 82-2-3476-5599 | Fax: 82-2-3476-5995  
[www.barunlaw.com](http://www.barunlaw.com)



**Andrew Kang**  
공인회계사

# 대학 학자금 어떻게 신청하나

## 대학학자금 신청에 따른 정보

매년 11월 30일 까지 거주 12학년생들은 주립대 입학 지원을 마무리하고, 12월 말 또는 1월 중순까지 사립대 입학 지원서 마감을 서두르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교 진학시 받을수있는 재정적 도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볼 수있습니다.

1. Merit Scholarship - 장학금 - Admission Application
2. Federal Need based Grant - 연방정부 보조금 - FAFSA
3. State Need based Grant - 주정부 보조금 - FAFSA
4. College's Need based Grant - 대학교 보조금 - FAFSA, CSS Profile
5. Private Scholarship - 각단체의 Application

위의 보조금을 받기위해 필요한 대개 두가지 신청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로 FAFSA 의 신청 기간은 12학년이 되는 해의 10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30일 까지입니다. 단 Cal Grant 관계상 거주 마감일은 3월 2일 입니다. 학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수입이며 그 다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모의 순수 자산입니다. FAFSA는 학교의 종류(4년제, 2년제, 사립, 공립, 사립 등)에 상관없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입학 신청과 함께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FAFSA 신청서 없이는 연방 보조, 주정부 보조, 학생 loan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FAFSA 를 접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FAFSA 를 바탕으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부모나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예상 학비를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EFC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보조금 액과 종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FAFSA신청조건을 알아봅니다.

1.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의 신분자격을 갖춘 신청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을 허락 받은 자, 난민 인정을 받은 자.
2.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검정고시를 합격한자
3. 마약에 관한 범죄 기록이 없는자
4. 전에 받았던 학비용자가 채납되지 않은자
5. 남학생 신청자인 경우 나이가 18세 에서 25세에 해당이 되면, 연방 병무청에 등록을 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군복무가 의무제가 아니므로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6. 진학하는 대학에 학기당 최소 6학점 이상 등록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7. FAFSA 는 매년 신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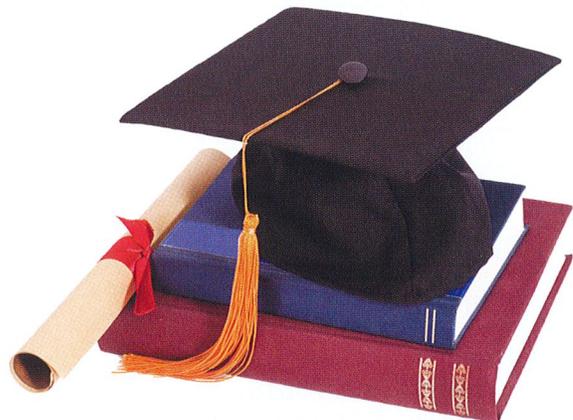
FAFSA를 신청하면 Social Security 번호와 영주권 번호가 사회 보장 관리국과 이민국에 의하여 Status Verification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FAFSA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둘째는 CSS Profile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약 350개의 사립 대학과 장학금을 수여하는 다수의 민간 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또 하나의 신청서인 CSS (College Scholarship Service)Profiling을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CSS 프로파일 이라고 합니다.

FAFSA와 다르게 CSS 프로파일은 각 학교의 자체 학자금 보조를 결정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자격은 학교마다 FAFSA조건과 약간 다를수 있으나, FAFSA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아주 자세한 가족의 소득 관계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합니다. FAFSA는 신청 기간이 항상 동일하지만 CSS 프로파일은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특히 조기 입학 신청을 하는 학생과 부모는 학자금 신청 기간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합니다.

FAFSA 신청은 무료이지만 CSS 프로파일은 유료입니다. 처음 한번만 내는 등록비 \$9.00과 한 학교당 \$16.00이 있습니다. CSS 프로파일 접수는 SAT 시험을 관장하는 [www.Collegeboard.org](http://www.Collegeboard.org)에서하고 자녀 SAT 등록때 사용한 접속 ID 와 password 를 사용하면 됩니다.



# “자녀 보호”생전신탁이 없다면 당신의 신탁은 미완성된 신탁입니다!

당신의 생전신탁은 당신이 평생 저축한 재산 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중 하나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생전신탁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회사는 수백 여 신탁을 검토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97%의 신탁은 아래의 4 가지의 문제에 대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신이 사망한 뒤 당신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자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당신의 자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자녀가 소송 당했을 경우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최대치의 절세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 또는 손해를 접하게 될수도 있는 이유와 자녀 보호 생전신탁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신 법규정 및 조항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Kim & Lee, LLP 에서 관리하는 신탁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신탁에서는 볼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advanced” 조항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귀한 재산을 당신의 자녀를 위해 온전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 Asset Protection 재산 보호
- Estate Planning 유산 상속 계획
- Business Planning 비즈니스와 세금법
- International Tax Planning 국제 조세 계획

김준 변호사 약력 상속 / Probate 전문 변호사  
Cornell 법대 U.C. Berkeley 대학  
알렉스 이 변호사 약력 비즈니스 / 세금법 전문  
Emory 법대 Rutgers 대학

성교한 계획을 정확히 준비하기 위해  
환정된 고객만을 접수합니다.



**Los Angeles**  
3701 Wilshire Bl., #1130  
L.A., CA 90010  
(800)793-5633  
kimleellp.com

**Orange County**  
2301 Dupont Dr. Suite 510  
Irvine, CA 92612  
(949)975-1870


 Alex Lee  
 변호사

# Decanting the Irrevocable Trust: The magic “reset” button.

Before the \$5,000,000 lifetime unified transfer tax exclusion (indexed for inflation) became permanent under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in 2013, 2011 and 2012 was an unprecedented year for many estate planning attorneys and their wealthy clients. Due to the threat of having the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amounts be retroactively reduced to 2001 levels of \$1,000,000 each, many clients saw the opportunity to gift up to \$10,000,000 of their estate into an irrevocable trust without having to pay gift or estate taxes. However, that same client, today, may want to make changes to the trust, but are unable to due to the trust’s irrevocable nature.

In California irrevocable trusts may be modified if: (1) all of the parties agree to a non-judicial modification; or (2) go to court and ask for a judicial modification. Non-judicial modifications require all parties to be alive, with full mental capacity, to agree on the changes. For judicial modifications, the parties must go to court and try to convince a judge to allow for a modification; there are no guarantees that the judge will allow for the modification.

Fortunately, there is one other way to modify the trust: trust decanting. Trust decanting is the act of distributing assets from one trust to a new trust with different terms. Just as one can decant wine by pouring it from its original bottle into a new bottle, leaving the unwanted sediment out, one can pour the assets from one trust into a new trust, leaving out the unwanted terms in the original 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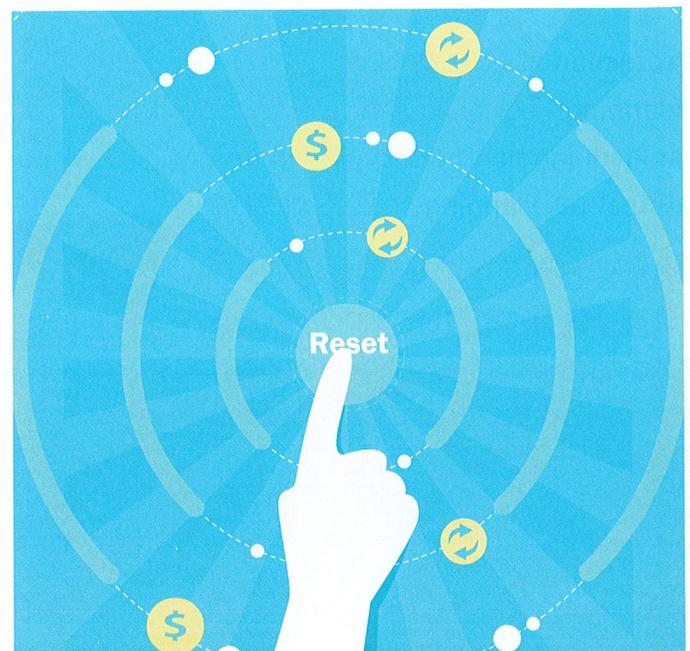
Here are the top ten reasons for considering decanting an irrevocable trust.

- (1) Change staggered or outright distributions in order to protect against creditors and divorcing spouses of the beneficiaries;
- (2) Changing a support trust into a discretionary trust;
- (3) Correcting drafting errors or ambiguous terms;

- (4) Add trust protector to easily make future changes or amendments;
- (5) Modifying powers of appointments;
- (6) Change trustee provisions;
- (7) Combining trusts for better efficiency;
- (8) Separating trusts;
- (9) Creating a special needs trust; and (10) Qualifying a trust to own S corporation stock.

How does one decant a trust? There are essentially two steps involved: (1) look to the irrevocable trust to see if it can be moved to a different jurisdiction, like New York, which has decanting statutes written into law; then (2) the attorney will prepare the appropriate documents to decant the trust to change some or all of the terms by pouring the assets into a trust with different terms. A 3rd optional step is to have the trust moved back to California for easy administration by the trustee.

If you have an irrevocable trust where you would like to make changes, our office can help.





Sun Hyang Shin  
공인회계사

## 밀린세금 협상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금보고를 성실히 하시다 예기치 못하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 어느 시점부터 제때에 세금을 내지 못해 밀린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IRS는 이런 납세자들에게 협상을 통해서 밀린 세금을 적절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 밀린 세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OFFER IN COMPROMISE라 하는데, 납세자가 협상 시점에, 앞으로 이 밀린 세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IRS가 여러 면에서 조사해서 만약 밀린 세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만약 IRS가 밀린 납세자의 현재 나이, 재산상태,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납세자가 앞으로 밀린 세금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협상해서 최대한으로 환수하는 것이 IRS의 협상 목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협상이 잘 되는 시점은 나이가 드셔서 경제 활동이 거의 없고,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밀린 세금 대부분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재산상태와 그리고 현 수입과 지출 (필수비용 : 예 food, clothes, rent)+ 허용되는 비용 : 예 Child care, Life insurance, Taxes, Health Care, Court Ordered Payment 등)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환산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또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유롭진 않은 상태에서 진심으로 밀린 세금을 해결하고자하는 의향이 있음을 IRS에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 보여주면 밀린 세금을 어느 정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 재산상태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INITIAL DEPOSIT 금액도 WAIVE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협상에서 합의점에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면 IRS에 어떻게 몇 번에 걸쳐서 내겠다는 협의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향후 5년 동안 더 이상의 밀린 세금이나 밀린 세금보고 같은 불이행하는 일은 없어야 OFFER IN COMPROMISE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탕감을 받지 않고 세금이 밀려 한 번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냥 밀린 세금을 제쳐놓고 고민하시고 힘든 시간으로 지내시는 것보다는 타당한 근거와 갚으려는 의지를 갖고 IRS에 협상하면 밀린 세금을 청산하시고 활기찬 미래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Apex Advisors is a tax advisory firm specializing in various Tax Cred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D Tax Credit. Based in downtown Los Angeles, Apex has successfully helped more than 200 CPA firms find valuable tax credits and incentives for their clients.

Since 2001

10,000+ Cases

200+ CPA Partners

1,000+ Clients

Former IRS Agents

IRS Attorneys

Former B4 CPAs

Engineers

## Services of Apex Advisors



R&D  
Tax Credit



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Work Opportunity  
Tax Credit



Cost  
Segregation

Manufacturing  
Software / Hi-Tech  
Design-Build

Any industry  
Fast Growing in CA  
Moving to CA

High Employee  
Churn  
Low wage workers

Real Estate Owners  
/ Investors

\$3M Software Firm  
\$490K R&D Credit in  
2015

Restaurant Business  
\$250,000 CA Credit in  
2017-2021

Retailer with 50  
shops - \$100K+  
Credit

Please contact us  
for benefit analysis



Rebekah Hong,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3460 Wilshire Boulevard, Suite 9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www.ApexAdvisorsUS.com](http://www.ApexAdvisorsUS.com)  
Office (213)457-7674, Mobile (323) 456-6877, [rebekah@ApexAdvisorsUS.com](mailto:rebekah@ApexAdvisorsUS.com)



박유진  
변호사

##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에 관한 많은 세금코드중에 잘 알려진 것이 IRC 121과 IRC 1031이다. IRC 121은 자신의 주거지를 팔기 5년전에 2년을 살면 개인은 25만불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부부일시는 50만불까지 감면을 받는 것이 요지이다. 종종 부부 공동명의의 주거지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오해이다. 부부중 한사람만 명의상 주인일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보고를 하고 있다면 50만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부부 한사람 사망시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사망후 2년간은 50만불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오랫동안 한 집에서 오래살면서 용자를 다 갚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저렴할 때 샀다가 다 페이오프 하고 나중에 판다면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게된다. 부모가 살아있는동안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자녀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부모가 샀던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증여받은 자녀는 부모가 샀던 가격 그대로 세금 기준치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매길때는 유리한 상황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속을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 기준치를 상향조정(step up basis), 즉, 올려서 측정을 한다. 즉, 이는 망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세금 기준치를 망자의 사망시 시장가격에 맞추주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아주 오래 전에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자녀가 향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혹은 내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사후 상속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좋다.

가끔 아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 등기이전을 자녀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국 양도소득세 혜택을 그대로 없애버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대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않으면 결국 probate court (상속법원)에서 상속처리를 해야하므로, 꼭 리빙트러스트외에도 필요한 유산상속계획을 제대로 해놓아야한다.

양도소득세 만큼이나 많이 부각되는 부동산관련세금은 재산세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주민발의안 58을 통해 재산세가 새로 책정 (Reassessment)이 되지 않고, 부모가 낸 금액으로 동결받을 수 있다. 주민발의안 193은 조부모가 살고 있던 집을 손자/녀에게 줄때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부모에게서 주거지를 받을 3세대의 직계부모 (2세대)가 살아있을 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거지 외에도 재산세 세금기준상 1백만까지 재산세를 동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해당되는 재산세혜택인 만큼 각각 해당주에 관련 재산세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란다.)

흔히 1031 exchange라고 알려진 IRC 1031은 상업용 부동산 혹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산 부동산을 사고 팔때 많이 적용하게된다. 즉,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예로, 어떤 이가 자신의 부동산 A를 팔고 남은 금액을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인 B를 사는 데 다 쓰게되면, A를 팔고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 지연혜택을 받기위해 꼭 갖춰야할 요건이 있다. 첫째, 비슷한 종류의 재산으로 exchange 할 것. 1031 exchange는 부동산, 비행기, 미술품 또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해당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exchange하고, 비행기는 비행기끼리, 미술품은 미술품끼리 exchange를 할때만, 비슷한 종류의 exchange가 일어났다고 보기에, 납세지연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번째, 새로 구입할 부동산은 판매 건물의 가격과 같거나 비싸야한다. 즉, 예전 건물을 80만불에 팔았다면 새로 살 부동산은 적어도 80만불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1031 exchange를 통해 판매한 부동산이 하나일지라도 여러개의 부동산으로 분산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 점이다. 세번째, timeline을 잘 맞추어야한다. A라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45일 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의 에스크로(escrow)를 열고 180일 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의 escrow가 끝나야한다. 45일 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을 명시하는 작업을 영어로 property identification이라 일컫으며, 부동산 세계까지 명시할 수 있다. 180일 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의 escrow가 끝나야하는 원칙 또한 잘 준수해야한다. 즉, A라는 부동산을 판 날짜부터 정확하게 180일이되는 날 자정까지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에스크로(escrow) 절차가 끝나야하는 것이다.

1031 exchange와 IRC 121의 혜택을 다 받고자하는 이들도 있다. 즉, 1031 exchange를 통해 구입한 multi unit 중 하나를 본인의 주거지로 만들고 그 후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1031 exchange가 잘 마무리 된뒤, 적어도 5년동안 그 해당부동산의 명의를 유지하고 5년안에 2년을 살아야한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잘 알려야한다. 또한 예의 경우-multi unit중 하나만 쓰기에 양도세 혜택이 1/N에 해당되는 만큼만혜택을 가지게 된다는 점 또한 숙지시키시길 바란다.

Estate Planning · Probate

# 유산상속법



## 박유진 변호사

### 유산상속법 (Estate Planning)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은 유산상속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3)380-9010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유산상속계획은 사후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계획에서 시작하여 사후 재산관리까지 상속계획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유산상속계획은 유산상속법정을 통하지 않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보호자 설정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음 세대로의 원활한 자산상속을 위해 유산상속세/ 증여세를 줄이는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며 비즈니스 상속까지 좀 더 포괄적인 상속계획입니다.  
유서/위임장 작성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s) and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신탁설립 (Living Trust)  
부부신탁 (Disclaimer Trust, A/B Trust, QTIP Trust)  
생명보험신탁 (Life Insurance Trust)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  
사단법인 (Private Foundation) & 회사설립 (LLC or Family Limited Partnership)  
유산상속법정 (Probate Administration) 과 상속분쟁 (Probate Litigation)



3550 Wilshire Blvd., #1100,  
Los Angeles, CA 90010  
Fax (213) 380-9011 Cell (213) 700-1619  
Tel (213) 380-9010

info@parklaws.com



Hanwook Jo  
공인회계사

# 외국 부동산에 투자시 알아야 할 미국세법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국내 부동산 투자시 적용되는 세법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추가적인 신고사항들이 있다.

## 1. 보유시 세금보고

외국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은 미국세금보고시 임대총소득과 임대비용(융자이자, 관리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정리하여 미국 세금보고시 포함하여야 하며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 부담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 임대소득세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정부 세금에서는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혜택이 있으나, 주정부에서는 동 혜택이 없다. 또한 외국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외국에서 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허용되는 외국소득공제(Foreign Income Exclusion)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2. 처분시 세금보고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도 매각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owned)하고 주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사용한 후 처분하면 독신일 경우 \$250,000, 부부합산일 경우 \$500,000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세법적용과 같다. 그러나 외국 소재 투자 및 사업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031 교환(Section 1031 Exchange) 방식으로 세금을 연기할 수가 없다. 임대 부동산 매각시에는 양도가격과 장부가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 환원(recapture)하여 일반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 이는 임대기간 동안 허용된 감가상각비 공제로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임대소득을 줄여 절약한 세금을 양도차익 발생시 같은 세율인 일반소득세율로 계산하기 위함이다.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하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과 1년 초과 보유자산의 처분에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 단기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종류 및 일반소득의 수준에 따라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은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은 매년 \$3,000까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이월되어 그 다음해부터 양도소득 또는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여 소유한 임대 부동산은 Section 1231 Property로 인정되어 순양도소득(Section 1231 Gain)은 우대세율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순양도손실(Net

Section 1231 Loss)에 대하여는 일반손실(ordinary loss)로 인정되어 전액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임대사업을 포함 사업자들의 사업상 양도차익과 양도손실 모두에 대하여 더 유리한 세율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일거양득 상황(Best of Both Worlds)'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미국 연방소득세에서는 외국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주정부에서는 동 공제혜택이 없다. 만약 한국에서 소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양도시 세금을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에 의하여 그 후에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이 속한 해에 수령대금에 비례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누진세를 부담을 완화해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다.

## 3. 기타 신고사항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동 법인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년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제외국기업(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으로 간주되고, 임대소득과 같은 Subpart F 소득은 미국 주주에게 배당(distribution) 여부에 상관 없이 통제외국기업(CFC)의 미국 주주는 순이익 지분에 대해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에 출자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100,000 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와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Form 926 (Return by a U.S. Transferor of Property to a Foreign Corporation)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외국 부동산 투자 또는 임대 과정에서 외국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일시적이라도 10,000불을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FinCen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미국재무성(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전자보고(e-file)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자산을 연말기준 \$50,000(부부합산 \$100,000) 또는 연중 \$75,000(부부합산 \$150,000)을 초과하여 소유한 적이 있으면 소득세신고서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상기 신고사항들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 \$10,000 이상이 부과될 수 있으니 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서 및 양식들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Charles Lee**  
공인회계사

# Nuances of Business Tax Credits

2016년세금보고(소득세)기간동안, 손님들과 CPA들에게 받은 질문 중, Business Income Tax credit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다.

Business Income Tax Credit 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이번 기사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Business Income Tax Credit에 대하여 설명하려한다.

## Federal BusinessIncome Tax Credits (General Business Credits)

미국연방정부에서는 최소 38종류의 Business Income Tax Credit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세금보고 data에 따르면 C corporation business credit program을 통하여 \$27,750,573,000 정도의 Income Tax Credit이 기업들로부터 청구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기업들이 \$27,750,573,000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뜻으로, 기업들의 cash flow와 자산가치를 그만큼 높인 것이 된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Work Opportunity Tax Credit과 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은 한인기업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Business Income Tax Credit 임이 옆 도표를 통하여 증명이 되었다.

이러한 친기업 program은 주정부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친기업적인 세금혜택은 연방/주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한국이민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중에서 몇가지 Business Income Tax Credit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직원고용 (근로기회)에 관한 Income Tax Credit이다.

연방정부 Program인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일명 WOTC는 특정한 (퇴역군인, Food stamp 수혜자와 가족 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Program으로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직원고용시 최고 \$2,400 - \$9,600까지 고용인에게 지원해주는 Income Tax Credit Program이다. 요구사항은 WOTC 신청서류가 신규직원의 고용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접수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WOTC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것은 WOTC를 통한 비영리법인(tax-exempt or nonprofit organization)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비영리법인의 경

우 일반적으로 비영리사업에서의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은 상기언급된 Income Tax Credit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에서 퇴역군인을 고용할 경우 WOTC신청이 가능하며, 수여된 WOTC Income Tax Credit은 Payroll Tax로 전환사용이 가능하며, 이로서 법인부담의 Payroll Tax를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연구개발에 관한 Income Tax Credit이다.

일명 우리에게 Research & Development ("R&D") Tax Credit 이라고 알려져 있는 Business Income Tax Credit은 말그대로 연구/개발 활동촉진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Income Tax Credit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Business Income Tax Credit이 제공되고있다. 더욱 고마운 것은 2016년부터 Start-up (신규)기업들에게는 소득세공제목적이 아닌, Payroll Tax 공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federal only). 이 프로그램의 공소시효는 연방 3년/ California 4년이며, 소급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Income Tax Credit은 2013년부터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California 주 Enterprise Zone tax credit ("CA EZ") 이다.

특정경제개발구역인 Enterprise Zone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던 program 은 2014년까지 신규채용증명(vouchered)을 마친 직원에 한하여 2018년까지 매년 새로운 credit 창출이 가능하다(tax years 2014-2018). 2018년까지 사용하고 남은 CA EZ credit은 향후 10년(tax year 2028)까지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이 의미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는 CA EZ credit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후부터 지금까지 단계적 폐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사업체를 Enterprise Zone에서 Enterprise Zone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는 2018년까지 주어진 새로운 Income Tax Credit 창출의 기회와, 2028년까지 받을 수 있는 Tax Credit Benefit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나쁜 예를 들자면, 2015년 이월 된 \$500,000의 Tax Credit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Enterprise Zone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500,000의 세금절감혜택을 못 받게된 사례다. 이런 경우, 다시 Enterprise Zone으로 이전하여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잘못 이해한 사실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게 된 예이다.

또한 이러한 Tax Credit은 기업매각시에도 도움이 된다. 주식을 파는 형식인

주식매각이 아닌 사업체의 자산을 매각하는 자산매각형식의 거래시, 자산매각의 수입은 매각하는 기업의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기업에게 주어진 Income Tax Credit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았듯이 현재 미국의 많은기업들이 Business Income Tax Credit을 사용하여 적절한 절세효과로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인사회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혜택은 기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없으며,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1,000,000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Tax Credit & Incentive Consulting은 현재 Local CPA 사무실에서는 자문을 받기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여 현재 미국정부에서 지원 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성공된 사업을 하시길 기원한다.

**Credit Table**

Code	Current Credits	Form	Offset Tax in Section			
233	California Competes Tax	FTB 3531			B	
223	California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tion	FTB 3541			B	
235	College Access Tax	FTB 3592			B	
209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ment	N/A		A2		
205	Disabled Access for Eligible Small Businesses	FTB 3548		A2		
204	Donated Africultural Products Transportation	FTB 3547		A2		
224	Donated Fresh Fruits or Vegetables	FTB 3811		A2		
203	Enhanced Oil Recovery	FTB 3546		A2		
176	Enterprise Zone Hiring	FTB 3805Z			B	C
218	Environmental Tax	FTB 3511		A2		
198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Hiring	FTB 3807		A2		
172	Low-Income Housing	FTB 3521			B	
211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Hiring	FTB 3808		A2		
213	Natural Heritage Preservation	FTB 3503			B	
236	New Advanced Strategic Aircraft	N/A		A2		
234	New Employment*	FTB 3554		A2		
188	Prior Year Alternative Minimum Tax	N/A		A2		
162	Prison Inmate Labor	FTB 3507	A1			
183	Research	FTB 3523			B	
210	Targeted Tax Area Hiring	FTB 3809			B	
Code	Repealed Credits with Carryover or Recapture Provisions	Form	Offset Tax in Section			
175	Agricultural Products	FTB 3540		A2		
196	Commercial Solar Electric System	FTB 3540			B	
181	Commercial Solar Energy	FTB 3540			B	C
202	Contribution of Computer Software	FTB 3540		A2		
190	Employer Childcare Contribution	FTB 3540		A2		
189	Employer Childcare Program	FTB 3540		A2		
	Employer Ridesharing					
191	Large					
192	Small	FTB 3540		A2		
193	Transit Passes					
182	Energy Conservation	FTB 3540		A2		
176	Enterprise Zone Sales or Use Tax	FTB 3805Z			B	C
207	Farmworker Housing - Construction	FTB 3540		A2		
215	Joint Strike Fighter Wages	FTB3540		A2		
216	Joint Strike Fighter Property Costs FTB 3540 A2					
198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Sales or Use Tax	FTB 3807		A2		
160	Low-Emission Vehicles	FTB 3540		A2		
199	Manufacturers' Investment	FTB 3540			B	C
220	New Jobs	FTB 3540		A2		
185	Orphan Drug	FTB 3540			B	
174	Recycling Equipment	FTB 3540		A2		
206	Rice Straw	FTB 3540		A2		
171	Ridesharing	FTB 3540		A2		
200	Salmon & Steelhead Trout Habitat Restoration	FTB 3540		A2		
180	Solar Energy	FTB 3540			B	C
179	Solar Pump	FTB 3540		A2		
217	Solar or Wind Energy System	FTB 3540		A2		
210	Targeted Tax Area Sales or Use Tax	FTB 3809			B	
201	Technological Property contribution	FTB 3540		A2		

출처: FTB Form Schedule P Instruction Page 5

<b>1a</b>	Investment (Form 3468, Part II only) (attach Form 3468)
<b>b</b>	Reserved
<b>c</b>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Form 6765)
<b>d</b>	Low-income housing (Form 8586, Part I only)
<b>e</b>	Disabled access (Form 8826) (see instructions for limitation)
<b>f</b>	Renewable electricity, refined coal, and Indian coal production (Form 8835)
<b>g</b>	Indian employment (Form 8845)
<b>h</b>	Orphan drug (Form 8820)
<b>i</b>	New markets (Form 8874)
<b>j</b>	Small employer pension plan startup costs (Form8881)(see instructions for imitation)
<b>K</b>	Employer-provided child care facilities and services (Form 8882) (see instructions for limitation)
<b>l</b>	Biodiesel and renewable diesel fuels (attach Form 8864)
<b>m</b>	Low sulfur diesel fuel production (Form 8896)
<b>n</b>	Distilled spirits (Form 8906)
<b>o</b>	Nonconventional source fuel (carryforward only)
<b>p</b>	Energy efficient home (Form 8908)
<b>q</b>	Energy efficient appliance (carryforward only)
<b>r</b>	Alternative motor vehicle (Form 8910)
<b>s</b>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Form 8911)
<b>t</b>	Mine rescue team training (Form 8923)
<b>v</b>	Agricultural chemicals security (carryforward only)
<b>w</b>	Employer differential wage payments (Form 8932)
<b>x</b>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Form 8933)
<b>y</b>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motor vehicle (Form 8936)
<b>z</b>	Qualified plug-in electric vehicle (carryforward only)
<b>aa</b>	New hire retention (carryforward only)
<b>bb</b>	General credits from an electing large partnership (Schedule K-1 (Form 1065-B))
<b>zz</b>	Other. Enhanced oil recovery (Form 8830) and certain other credits
<b>2</b>	Add lines 1a through 1zz and enter here and on the applicable line of Part I.
<b>3</b>	Enter the amount from Form 8844 here and on the applicable line of Part II.
<b>4a</b>	Investment (Form 3468, Part III) (attach Form 3468)
<b>b</b>	Work opportunity (Form 5884)
<b>c</b>	Biofuel producer (Form 6478)
<b>d</b>	Low-income housing (Form 8586, Part II)
<b>e</b>	Renewable electricity, refined coal, and Indian coal production (Form 8835)
<b>f</b>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paid on certain employee tips (Form 8846)
<b>g</b>	Qualified railroad track maintenance (Form 8900)
<b>h</b>	Small employer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m 8941)
<b>i</b>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Form 6765)
<b>j</b>	Reserved
<b>z</b>	Other

출처: IRS Form 3800 General Business Credit, Page3

Credits:	
Foreign tax credit	118,279,104
U.S. special fuels taz	272,523
Credit for tax paid on undistributed capital gains	*23,762
Refundable credits	211,187
• General business credit	• 27,750,573 •
Empowerment zone employment credit[35]	277,964
Prior year minimum tax credit bonds	425,521
<b>General business credit items:</b>	
Current year regular investment credit	254,154
Allowable alcohol and cellulosic biofuel fuels credit	1,871
• Current year research activities credit	• 11,427,529 •
Current year low-income housing credit	11,427,529
Current year disabled access credit	346
Current year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credit	784,804
Current year Indian employment credit	41,286
Current year orphan drug credit	1,023,894
Current-year credit for contributions for small employer pension plan startup costs	232
Current-year credit for qualified railroad track maintenance	171,103
Current year new hire retention credit	*[1]
Tentative general business credit [27]	79,159,121
Current year biodiesel and renewable diesel fuels credit	16,786
Current year low sulfur diesel fuel production credit	6,994
Current year distilled spirits credit	2,929
Current year nonconventional source fuel credit	*9,867
Current year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40,256
Current year alternative motor vehicle credit	2,686
Current year 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9,590
Passive-activity credits	469,222
Passive-activity credits allowed in 2013	174,705
Carryforward of general business credit from prior years	59,829,198
• Allowable work-opportunity credit	• 1,194,524 •
Allowable credit for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on tips	608,298
Allowable small employer health insurance premiums credit	105,046

출처: 2013 IR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Report, Page 162



김해원  
변호사

#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트립 제공의무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체크가 아니라도 현금으로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공제하지 않고, 페이롤 텍스 보고 또한 하지 않은 경우라면 EDD 페이롤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즉, 세금보고자체를 안하는것이 불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를 한다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도 페이롤 텍스 공제를 하지 않고, 페이롤 텍스 보고 또한 하지 않으며, 더우기 임금 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단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같은 종이에 그 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종업원들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첫 위반에는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시에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에서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큰 문제로 삼고 그에 관한 조사를 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주 (26주 x 2)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를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유급평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페이스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평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평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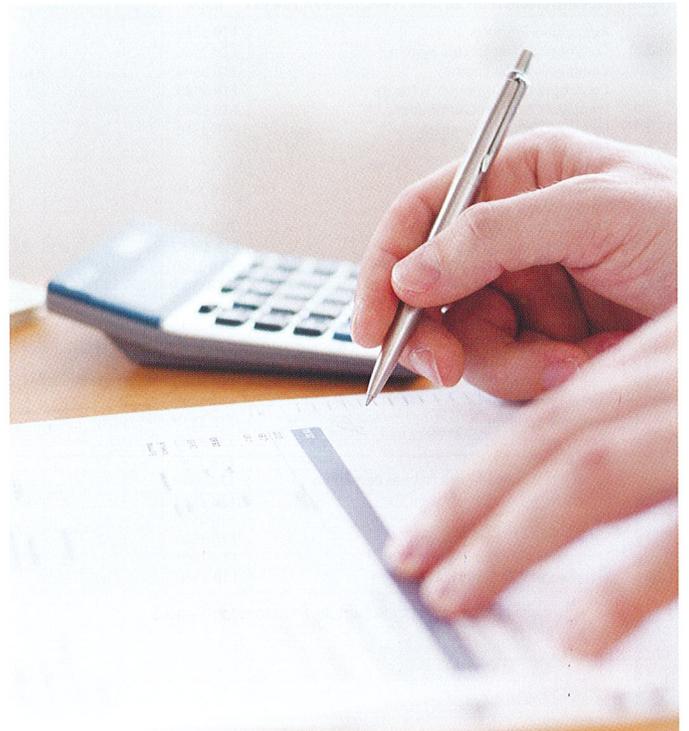
에 적어서 제공해야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평가가 몇 일인지 기록하고, 적립된 유급 평가시간이 얼마인지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마지막으로 알아야할 사항은 페이스팁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고 카피 하나를 보관하고 EDD나 IRS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CBB Bank SBA**

## 비즈니스 전문은행, CBB Bank는 다릅니다

- 4년 연속 전미주 Top 25 SBA 대출기관 (2013-2016)
- 2016년 전미주 커뮤니티 뱅크 중 11위 (2016 American Banker)
- 2016년 금융기관전문 신용 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 최고 5-star 획득
- Super Premier Performance Award (2016 Findley Reports)

SBA 상담문의 **323.988.3000**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approval.



**Eugene Kim**  
(Cal-Kor Insurance Services)

# 오바마케어와 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가입기간

##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의 요점은 무엇인가?

소규모 동종업체들 간의 연합건강보험 및 제한적 단기건강보험의 확대, 주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건강보험 구매 허용, 그리고 의료비용보조금(CSR: Cost Sharing Reduction) 중단을 들 수 있다.

## 의료비용보조금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부보조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 자체를 지원하는 택스 크레딧, 그리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게 되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지원하는 의료비용보조금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중에서 의료비용보조금 지불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담고 있다.

## 의료비용보조금 중단 영향은 무엇인가?

결국 보험료의 증가다. 의료비용보조금 또한 먼저 소득이 자격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될 경우 실버 플랜 중에서 일반 70% 실버 플랜이 아닌 73%, 87%, 94%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골드나 플래티늄 플랜보다도 실제 지불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다.

정부가 보험사에게 지불하던 의료비용보조금을 중단한다면 부담이 고스란히 보험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변화를 감안하고 2018년 보험료 자체를 상향조정하여 발표해둔 상황이므로 당장 새로운 보험료 급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택스 크레딧 액수도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우선 대부분의 가입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증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자체가 추가로 오른 셈이므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 의료비용보조금 중단 결정이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닷새 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상원의원 사이에 의료비용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다고 보도되었다. 의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법인가?

그렇다. 의회를 통한 정상적인 폐지 및 개정이 난항을 겪자 근본을 약화시키고자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일 뿐 오바마케어, 즉 ACA (Affordable Care Act)는 여전히 미국의 법이며, 따라서 개인 및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연방정부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예년에 비해 반으로 준 1개월 반을 정규가입기간으로 발표했으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월 간이 정규가입기간이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12월 15일까지 가입 및 플랜 변경을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고, 내년 1월 19일까지 마치면 내년 2월 1일자, 내년 1월 31일까지 마치면 내년 3월 1일자로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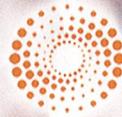
##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줄었다는데?

Anthem blue Cross사가 2018년 1월 1일부터 남가주 개인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큰 변화다. 2010년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플랜이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오바마케어가 발표된 2010년 이후에 가입한 플랜이라면 다른 보험사의 플랜으로 옮겨야 한다.

그밖에 보험사에 따라 플랜을 단종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플랜이 없어질 때는 반드시 기존 가입자에게 통지가 가게 되어 있으니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보험사에서 오는 메일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본인의 아니게 무보험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 Knowledge You Can Trust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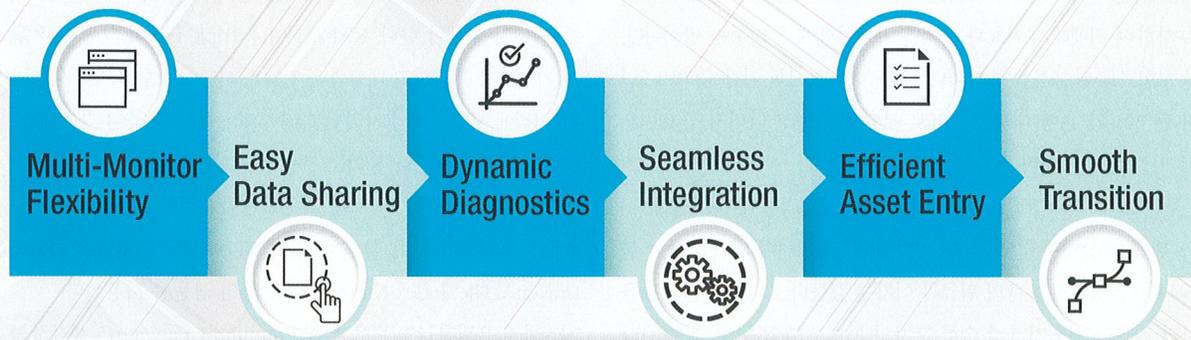
## UltraTax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UltraTax is The Highest Rated Professional Tax Software 2009-2016**

(according to the tax software survey conducted by the Journal of Accountancy and Tax Advisors)

- \* Used by over 93% of all practicing Korean CPAs and EAs in greater NY area
- \* Used by over 180 practicing Korean CPAs in California
- \* Used by 7 out of 10 largest Korean CPA firms in the US

e-Consultants Inc. 를 통하여 UltraTax Program을 구입하실 경우 상당한 **가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inda Han  
(National Life Group)

# Premium Financing Program



대부분의 한인들은 30대와 40대의 수입은 집을 마련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한다. 50대의 수입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비를 내고 나면 별 준비없이 60대의 노후를 맞는다.

이 시기부터는 수익 또한 정체되거나 줄어들게 된다. 저

축,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만 의지했던 성실하고 일반적인 한인 가정이 패닉이 오는 시기가 이때다. 이들에게 은퇴플랜을 위한 해법은 바로 레버리지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Income Focused Premium Financing이다. 레버리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주식, 부동산, 비즈니스 등의 경제분야에서는 일반적이다. 저축이나 개인의 재산만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자본을 차입하여 그 자본을 지렛대로 삼고 자기 자본의 수익율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레버리지효과라고 한다. 그 원리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모기지 대출이다.

## 1. Premium Financing Program의 종류

### A. Kai-Zen

적은 비용과 까다롭지 않은 가입조건으로 실현하는 꿈의 은퇴 대안이다. Kai-Zen 프로그램은 보험회사에서 도입한 모기지의 concept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가입자는 5년간 돈을 납입하고, 보험사는 그 돈을 은행의 용자와 함께 총 15년간 투자하여 지렛대 투자효과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총 10년동안 보험료를 완불하는 플랜이다. 대출 계약은 보험 기간 중 첫 1-5년간은 가입자 돈 50%와 은행 대출금 50%로 부담을 나누고 나머지 6-10년은 은행 대출금 100%를 활용한다.

즉 개인 : 은행 = 25% : 75% 로 leverage 된 자금이 보험상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10년 후 완불된 상태에서 5년을 더 기다린 후 총 15년이 되면 그동안 불어난 (cash value) 금액에서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그 후 일정 기간을 기다리고 나면 결과는 가입자가 순수한 혼자서 돈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 보험금과 은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living benefit 보장은 가입 첫해 부터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중산층

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은퇴자금 마련 해법이라고 자부한다.

### B. Triple Play

총 10년동안 보험료를 완불하는 플랜이다. 단 가입조건이 있다. Income을 보는 등 가입심사는 약간 더 까다롭지만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Triple Play는 최하 보험료가 연간 \$100,000씩 10년으로 이 중에서 \$30,000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대출 금액은 3대7로 정해지므로 가입자가 \$30,000을 낼 경우 \$70,000을 은행이 매치시켜 10년간 은행과 개인이 함께 납입을 하게된다. 이 경우에서도 개인 : 은행 = 30% : 70%의 leverage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10년 후 완불되면 11년째에 그동안 성장한 (cash value) 금액에서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이 보험은 부부가 함께 들 수도 있고 Kai-Zen보다 조금 더 많은 보장이 약속된 상품이다. 기업에서는 Executive Bonus Plan으로 사용도 하고, Buy-Sell Agreement Funding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Triple Play에서도 큰액수의 사망보험금과 living benefit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중산층 부부에게 이보다 좋은 은퇴자금 마련 방법은 없다고 본다.

### C. Traditional Premium Financing

전통적인 방식의 Premium Financing 보험은 HNWI (High Net Worth Individual) 들이 오래동안 사용해 오던 방법이다. 대부분 보험금이 \$5,000,0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은퇴자금 마련보다는 재산 상속에 관심이 있으므로 사망시에 보험금을 통해 원활한 상속이 되도록 "Estate Planning" 상품을 디자인 해야 한다. KAI-ZEN이나 Triple Play와는 달리 은행 이자 부분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대출받은 전액은 사망시 보험금으로 갚을 수도 있고 중간 시점에 보험금에서 자라난 Cash Value를 사용하여 갚을 수도 있다. 자격 조건이 맞으면 계산을 불리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생명보험 중에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성인 Variable Universal Life 은 쓸 수가 없어 Whole Life, Universal Life, Guaranteed Universal Life, Index Universal Life 등의 상품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Premium Financing은 생각하는 것은 중산층에게 너무 먼 꿈이었다. 현명하고 능률적인 미래계획은 그러나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고객에게 이 good news를 전할 수 밖에 없다.



전석호  
공인회계사

# 임대수입이 있는 S Corp의 딜레마

S corp.은 10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사업체 형태로, 주로 소규모 사업체에 유리하다. S corp.이 특별한 이유는 IRS가 S corp.의 순수입에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고, 그 순수입(혹은 순손실)과 그 외 몇 가지 사항 등에 대하여 주주가 각각 자신의 지분에 따라 개인 소득세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각 주 정부는 아주 적은 액수의 세금(1.5%)을 징수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일반 법인인 C corp.과의 확연히 다른 세법의 적용과 절세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S corp.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S corp.의 주주이면서 직원으로서 봉급을 받는 경우, 고용세를 무리하게 줄일 수 있는 악이용의 소지가 있어, IRS가 이를 주시하게되었다. 한인들이 또한 S corp.을 선호하여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체 형태를 이용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의 S corp.이다. 일반 법인 C corp.을 세법상의 조건만 갖추었다면 언제든지 S corp.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C corp.일 당시에 Earnings & Profit(E & P)을 갖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S corp.의 총 순수입의 최소 25%정도가 이자, 배당금, 렌트 수입 등의 수동적 성격의 투자 수입(Passive investment income, PII)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S corp.으로 설립되지 않고, 순수입이 누적된 C corp.인 회사를 전환신청하여 S corp.이 되었고, 이 회사가 아파트, 상가 등을 소유하여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혹은, S corp.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수입도 발생하다가, 은퇴를 고려하여 주력 사업체를 접고, S corp.명의로는 계속해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위의 설명대로, PII가 총 수입의 25%를 넘는 경우, S corp.은 Penalty 성격의 세금을 IRS에 내야하는데, 25% 초과분의 PII에 35%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계산법을 예로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경우에 합당하는 A라는 S corp.이 있는데, 그 총수입이 20만달러이고, 그 중에 순수한 PII는 8만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따라서 8만달러의 PII는 총수입의 25%를 초과하며, 그 초과분은 3만달러로 계산된다(8만달러 - (25% X 20만달러)). 그러면, A라는 S corp.은 3만달러에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1만5백달러의 세금을 IRS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Penalty 성격의 추가적인 세금을 S corp.이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C corp.이었을 당시 생성되고 누적된 E & P를 회사의 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지 않은채, S corp.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C corp.의 E & P는 계

산법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거의 Retained earnings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 corp.은 법인세를 먼저 내야하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서 다시한번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의 구조이다. 따라서 S corp.으로 전환하여 배당금과 같은 종류의 수동적 성격의 PII를 발생시킬 때, IRS는 이를 C corp. 당시의 세금이 아직 붙지 않은 배당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위의 경우가 계속해서 3년을 지나게 되면 S corp.은 그 지위를 잃게되어 다시 C corp.으로 돌아간다.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미리 S corp.을 설립하여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게 하고, C corp.은 계속해서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S corp.을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가장 좋지 않은 사업체 형태가 바로 C corp.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S corp.의 임대수입이 PII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자로서 테넌트들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비용 이상의 Significant service를 제공할때 수동적 투자 수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사업체 형태를 결정할때 미래의 사업 구상과 함께 경우에 따라 과거를 돌아보며 가장 알맞은 형태를 찾는게 현명하다.





Johnny Jeong  
공인회계사

# 외국법인의 미국 파트너십투자 관련한 세무이슈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크게 미국지사 (해외지점 혹은 연락사무소) 혹은 자회사의 형태를 고려하게 된다. 한편, 처음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나 기존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본사가 자회사와는 별도로 미국 파트너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또한 종종 보게 되며, 미국 파트너십의 원천징수에 대한 고려나 이해 없는 투자로 인하여 세무상 낭패를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그 가장 큰 장점의 하나인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이중과세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파트너십에 한국본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이는 본사의 미국지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미국 파트너십에서 제공하는 Schedule K-1 Income을 토대로 한국본사가 미국세청 (IRS)에 외국회사로서 법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파트너십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에도 한국 본사가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시

점은 아마도 외국인 파트너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에 따라 외국인 파트너에게 당해 수익을 분배 (Distribution) 하기 전에 해당 파트너에게 귀속 될 파트너십의 수익에 대하여 법인 최고세율 35% (비법인의 경우 39.6%)로 매분기마다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벌과금을 부과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추후 미국 파트너십 투자를 고려할 때 참고하기를 바라며, 미국 현지법인 설립 후 파트너십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한 세무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2014년 한국 법인들로 구성된 한국 파트너십이 미국 파트너십에 직접 투자를 하였다. 파트너십의 설립 초기인 2014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5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미국 파트너십은 세무상 우선 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선택을 행사하여 2015년에 큰 손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던 한국 파트너도 꽤 큰 손실이 기록된 Schedule K-1을 받게 되었다.

일반적인 미국 파트너였다라면 다른 수익과 상쇄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하였



기에 그러한 조기 비용공제 선택이 큰 혜택이 될 수 있었으나, 한국 파트너사에는 오히려 막대한 벌과금이 뒤따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014년과 2015년간 미국 파트너십은 한국 파트너사에 적절한 미국 세무지문 없이 일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한국 파트너사는 막연히 미국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는 다음해인 2016년에 추가 매출이 발생한 반면 관련 비용들은 이미 2015년도에 상당 부분 공제되었기에, 결국엔 2016년 Schedule K-1상 \$1M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서 2017년 3월, 35% 혹은 39.6%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미국 파트너십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실적을 더해 보면 여전히 약 \$5M의 적자인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한국 파트너사는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미국 파트너십 담당자도 외국 파트너사의 투자가 처음인지라 해당 세법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어, 미봉책으로 지난 3년 세무신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말로 몇 달의 혼선은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다. 부랴부랴 한국 파트너사는 외국 파트너십으로 우선 납세자 식별번호를 신청하여 3년치의 파트너십 세무신고서 작성과 함께 각 한국 법인에게 제공될 Schedule K-1을 작성하였다. 또한, 파트너들이 한국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파트너십 원천징수세 신고서인 양식 8804 작성 및 양식 8805를 한국 법인들에게 제공하고, 반면 해당 Schedule K-1을 받은 한국법인 또한 납세자 식별번호를 신청하여 Schedule K-1 수익과 손실에 따라 양식 1120-F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세무 신고서점에서 미국 파트너십은 추가로 양식 8804-C “Certificate of Partner-Level Items to Reduce Section 1446 Withholding” 제출을 한국 파트너십에 요구하였다.

양식 8804-C는 파트너십으로부터 당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외국 파트너가 그와 상쇄되는 다른 손실이 있을 경우, 미국 파트너십은 세법 144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청 확인서라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미국 파트너십의 35% 혹은 39.6%의 원천징수 후, 실제 수익이 없는 외국 파트너가 세무신고를 통해 추후 환급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식 8804-C를 제출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년도 세무신고서가 제때에 신고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파트너사는 그 조건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식 8804-C의 혜택 또한 볼 수 없었고, 2017년 9월 15일 미국 파트너십은 39.6%의 최고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었으며, 한국 파트너십은 세무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6개월 이상의 혼란 끝에 결국 지난 3년치의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제때에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은 파트너십은 IRS로부터 상당한 벌과금 통보서를 받게될 테고, 그 벌과금은 고스란히 한국 파트너사에 전가될 것이다.

한국 파트너사의 입장에서는 미국 파트너십이 굳이 추가적인 우선 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원천징수의 이슈가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싶겠지만, 해당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미래 시점에 과거 손실과 상쇄하고 싶다면 과거 손실에 대한 시기적절한 세무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 세법상 과거 손실은 20년간 이월 되기에, 이는 또 다른 미국내 수익과 상쇄될 수 있는 일종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복잡한 원천징수세법을 간과한 채, 외국 파트너사에 혜택이 전혀 없는 불필요한 우선공제 선택을 한 미국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Daniel M. Choi**  
Wealth Management Advisor

# Rate of Return

## 잘못 인식된 수익률

먼저 수익률(Rate of Return)이란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율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개인 및 비즈니스 재정관리의 세계에서는 수익율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십년동안 브로커와 경제자문가들은 수익율을 주요 판매포인트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투자구매를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많은 경우, 투자수익율은 재정적 성공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율은 유능하고 성공한 투자자, 재정관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것의 단지 일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수익율은 대단히 과대평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포괄적인 재정상황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수익율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수익율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 개념의 이해부족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율은 자동차의 엔진과 유사합니다. 예를들어, 잘 정비된 엔진은 매우 중요하며, 빠르고 안전한 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엔진만이 차의 전부 아닙니다. 엔진 뿐만아니라 브레이크시스템, 냉각시스템, 에어컨, 파워시트, 스테레오시스템, 자동차크기 등등의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자동차의 성능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동을 걸고 4초 안에 60마일로 달리도록 설계된 로드스터의 스피드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매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경제성을 우선으로 보고 미니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수익율도 단순히 재정적 성공의 한 척도일 뿐입니다. 자산보호, 법적절차, 현금유통, 세금 및 부동산계획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투자수익이 증가하는 속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율이 더 매력적이고 쉽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은 간과되거나 무시됩니다. 이러한 다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익율은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손쉽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수익율이라도 반드시 명시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수익(nominal return)"과 "기하학적 평균 수익(geometric mean return)"의 차이입니다. 수익의 측면에서는 명목상의 평균 수익율은 실제로 얻는 수익과는 매우 다릅니다.

32 예를들어, 여러분이 1,000 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년동안의

투자 진척상황을 보면 달성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Year	Return	End of Year Balance
1	+100%	\$2,000
2	-50%	\$1,000
3	+100%	\$2,000
4	-50%	\$1,000

여러분은 1,000 달러의 투자로 시작하여, 4년 후 1,000 달러로 종료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율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금을 감안해보면 여러분의 투자는 적자를 초래한 셈입니다.

이제 수익을 합산하고 투자를 실시한 4년으로 나누어, 평균수익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 - 50\% + 100\% - 50\%) \div 4] = +25\%$$

계산상으로는 평균 수익율은 +25%이지만 실제 수익액은 마이너스입니다. 명목적 수익율의 문제는 백분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수익은 백분율 또는 "백퍼센트"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가치가 달라지는 실제의 현금입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2년차, 4년차(위의 목표 참조)의 손실을 복구한다는 것은 떨어진 투자원금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더 큰 퍼센트 또는 백분율의 가치를 달성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환된 기하학적비율, 입금 또는 인출된 실제수익률, 세금, 수수료, 인플레이션 및 다른 요소들이 여러분의 수익율을 끌어 내립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수익을 보다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무시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때 왜 적자가 되고 실패했는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익율은 수익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치는 숫자를 구하는데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있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나누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변동성과 수익율의 순서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두가지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율은 해마다 다양하지만, 평균수익율은 +3.5%입니다.

Year	Portfolio A Return	Portfolio B Return
1	+16%	+10%
2	-9%	-3%
3	+16%	+10%
4	-9%	-3%
AVERAGE	+3.5%	+3.5%

따라서 두 포트폴리오가 모두 1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4년후에도 이 두 포트폴리오의 결과가 같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4년 후, 포트폴리오 A는 111,429달러, 포트폴리오 B는 113,848달러로 그 차이가 2,400달러를 넘습니다.

### 복리는 오인된 계산이 될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이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순수하게 1대1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5세에서 65세까지 주당 50달러를 평균 6%의 수익율로 투자할 경우, 합계가 402,387달러가 됩니다. 이는 연간 2,600달러의 비용절감으로 실로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 음식, 주거, 테크놀로지, 기술 및 생활양식도 복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실제수익율과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진정한 1대1의 관계에서 제대로 복리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그저 복리의 힘을 보여주는 예측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퇴직계획용의 투자포트폴리오의 비교와 가설적인 보험 및 연금계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명목소득비용을 보여주는 차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차트를 기반으로 퇴직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에서, 저는 수익율이 혹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조정을 경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중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재정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수익율이 과대평가되는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되어 오용되고 종종 이행될 수 없는 약속으로 판매됩니다. 여러분이 400마력의 자동차 엔진을 가졌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과연 얼마나 좋은차 일까요?

**PROFECTUS FINANCIAL**  
ACCOMPLISH. PROGRESS

**알렉스 조 Aleks Dyo    Kelly Woo    하워드 이 Howard Lee**

**PROFECTUS FINANCIAL**  
프로펙터스는 라틴어로 "성취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으로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래닝: 401k | DB Pension Plan 설립 및 투자관리 | 재무 위험 관리 | 절세 전략 및 자산보호 계획 | 그룹 건강보험 | 사업체 보험  
개인 플래닝: 투자설계 및 관리 | 은퇴 계획 | 유산상속 계획 | 자선사업 계획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are offered through Profectus Wealth Management Company,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are offered and sold through individually licensed and appointed agents in all appropriate jurisdictions. Aleks Dyo CA Ins. Lic. #0D97068 Kelly Woo CA Ins. Lic. #0G37586 Howard Lee CA Ins. Lic. #0C29994

자세한 내용은 800.811.6611 또는 213.480.9400 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ProfectusFinancial.com](http://www.ProfectusFinancial.com) 을 찾아주세요.



**Soo Park**  
변호사

# Employment Law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 2017년 한해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는 거의 2,500개의 새로운 법안이 소개되었고, 그 중 1,000개 이상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은 트럼프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캘리포니아의원들이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반대대응 혹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많은 법들이 직장과 고용, 노동법에 관련된 것들이므로, 고용주들의 주의를 필요합니다.

**1. California “Bans the Box” :** 먼저, 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제(conditional offer)를 하기 전에 구직자에게 범죄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용되는 고용신청서에는 “당신은 범죄기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스’를 금지한다고 하여 “Ban the Box”법, 혹은 “Fair Chance”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이미 올해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원 5인 이상의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신청서에 범죄기록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을 지우셔야 하고, 면접과정에서 범죄기록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건부고용제(conditional offer) 후에는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용신청인의 동의하에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용신청인이 범죄기록이 있으며, 그 사실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는 (1) 범죄성격과 중대성, (2) 형량, (3) 직책 및 업무종류를 고려하여, 구직자의 범죄사실이 직책과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어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개별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평가후 임시결정을 내린 다음, 구직자에게 (1)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기록에 의한 임시결정이 내려졌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2) 범죄기록사본이 있을 경우 보내주어야 하며, (3) 구직자가 5일안에 답변서를 통해 설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구직자는 범죄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후 누우치고변화되었다, 등의 설명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고용거부를 결정한 경우, (1) 서면으로 최종결정을 통보하고, (2) 구직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며, (3) 구직자가 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를 통해 컴플레

인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처음부터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으며, 범죄기록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2. California Bans “Salary History” Inquiries :** 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나 고용혜택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여부, 혹은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묻지 않았는데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과거 급여를 공개한 경우, 고용주는 그에 따라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직급에 따른 급여등급 (pay scale)정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신청서나 면접질문 등을 잘 확인하시고 새로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3. California Enacts Job-Protected Parental Leave for Smaller Employers :** 현재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들만이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를 통해 육아휴직을 주게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New Parent Leave Act 에 따라, 75마일 반경이내에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FMLA나 CFRA 적용대상인 고용주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직원이 20명 이상 49명 이하인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MLA / CFRA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1,250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최대 12주까지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낼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하며, 휴직에서 돌아올때 같거나 비슷한 직책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FMLA / CFRA 와 마찬가지로, 12주의 휴직은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다른점은 FMLA / CFRA 는 중병(“serious health conditions”) 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위해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New Parent Leave Act는 육아휴직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직원 20명 이상 49명 이하의 고용주분들은 기존 핸드북이나 직원 지침서를 검토하시고 2018년 1월1일전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Other Notable Changes :** (1) 이민법위반단속 - 먼저, 캘리포니아고용주는 사법영장이 없는 이민국의 단속 및 집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

게 되었습니다. 현재연방이민법에서는 이민국집행요원들이 조사나 단속을 하러 왔을 경우, 작업현장을 수색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캘리포니아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국은 사법영장을 통해서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와 방법으로 기존직원의 취업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부고발자가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법을 어겼다는 “합당한사유”(reasonable cause)를 법원에 납득 시키기만 하면, 고용주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의무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계속 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법원명령(injunction)을 요청할 때는 훨씬 더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새로운 법으로 인해 내부고발자 원고들이 매우 낮은 기준으로 법원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 현재 직원 50명 이상의 고용주는 모든 매니저나 supervisor에게 2년에 한번씩 “AB 1825 training” 이라고도 불리는 ‘성희롱, 차별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교육에 성정체성이나 성적취향에 따른 차별금지교육을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4) 내년부터 건설시공사 (general contractor) 들은 외주업체(subcontractor)의 노동법위반에 따른 임금미지급 및 고용해택미지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부건설프로젝트에만 해당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은 시공사(general contractor) 들이 외주업체들 (subcontractor) 의 직원급여자료(payload record) 등을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급여정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ndy Kang**  
(IBE Insurance)

# 종업원 상해보험의 이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주는 직원이 한명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의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오너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주요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CPA나 보험 전문가들이 비즈니스오너들에게 좋은 조언을 드려서 보험료도 최대한 절약하고 불의의 사고나 클레임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보험료산정기준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각 종업원의 하는 일(Job classification)에 따라 페이롤에 적용되는 Rate를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Clerical office Employee (사무직)의 상해보험요율이 가장 작은 편이며 (페이롤의 1% 미만), 사고의 위험이 많은 봉제업, 페인트업, 조경, 건설업 등의 요율은 페이롤의 10% 이상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전반적인 물가인상과 더불어 최근 클레임이 다발하는 관계로, 5년전과 비교하여 거의 보험료가 2배 정도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가입시에 회사 종업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분석해서 맞는 Job description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Audit 시에 자주 분쟁이 되고 있는 사무직의 경우는 Separated office에서 서류와 컴퓨터작업만 하는 직원을 사무직이라고 인정합니다.

## Owner exclusion

비즈니스오너의 경우에는 종업원상해보험에 포함하고자, 또는 포함 안 할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너페이롤이 대부분 많이 발행하기에, 오너분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Exclude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절약됩니다.

전에는 1%라도 오너십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5% 이상 오너십을 가지신 오너분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Exclude가 가능하며 페이롤 계산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에 반드시 보험사에 Signed Owner exclusion form을 보내야 하며 보험 Policy에 Excluded owner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Exclusion이 가능하기에, 매년 보험Policy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오너십 변동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보험사에 Exclusion 여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EXPERIENCE MODIFICATION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정부의 의무보험으로 WCIR라하는 정부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회사의 상해보험기록이 보고되며 보험료와 클레임 등을 근거로 각 회사의 Ex-Mode가 일년에 한번씩 발표됩니다. Ex-mode는 3년이상 상해보험을 유지하고 매년 \$10,000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회사에 대한 Experience modification로서 100%로 시작하지만 3년간 클레임 없이 80%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20%정도의 보험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험이 캔슬되거나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여 200%의 Ex-mode가 된



**PAYCHEX**

**Jasmine Kim, Account Manager**  
**Mobile: (310) 804-3366**  
**Email: jkim1@paychex.com**

다면 같은 조건의 다른 회사보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불리하며 Ex-mode가 높은 회사의 경우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견적을 Decline하기때문에 Ex-mode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회사의 Ex-Mode는 WCIRB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onnect.wcirb.com/STAROnline/>

### **PAYROLL AUDIT**

종업원 상해보험은 보험가입시에 일년간 예상 페이롤에 따라 가입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로 1년후 실제 페이롤이 확정됨에 따라 Payroll Audit를 하고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오너분들이 Audit를 무시해서 보험이 캔슬되거나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yroll audit는정확한 일년간의 페이롤을 각 Job Classification에 따라 보고하시는 것 이므로 CPA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직무별 정확한 페이롤을 보고하시고 15%이상의 오너분들은 계산에서 제외해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Overtime은 Regular pay에 근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Audit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며, 보험사의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Audit Dispute를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담당 보험에이전트와 협조하여 Audit 관련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Fraud claim과 사고예방교육**

종업원 상해보험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좋은 취지의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Fraud claim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safety training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해보험 보험사들은 Website를 통해 Loss control support를 하고 있고, Free consultation 현장 방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와 Fraud claim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Preventive safety training과 매뉴얼 등을 비즈니스오너들이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Paychex Accountant Knowledge Center (AKC) helps accounting professionals access industry news and resources to answer key business questions, increase productivity, and enhance client relationships — with no cost to you or your firm!

- Daily Payroll, HR, and Tax News
- CCH Tax Briefings and State Tax Review Newsletter
- HR Compliance Library
- More than 150 Interactive Financial Calculators
- U.S. Master Tax Guide
- Online CPE Courses
- Client Letter Toolkit

**Register for the AKC to  
access the 2017 Online MTG!**  
[paychex.com/AKC](http://paychex.com/AKC)

**PAYCHEX**

Payroll • HR • Retirement • Insurance

Paychex is a proud sponsor of the KACPA.





**Patti Handy**  
 Mortgage Advisor

# The Loan Process Demystified

I think most people would prefer a root canal over getting a home loan. The idea of going through the loan process seems daunting to most, but in reality, it's quite simple. Yes, the guidelines have become more stringent after the mortgage meltdown, but it's not nearly as bad as you may think. Let's start out with the typical documents required by the lender. The same documents will be required whether you are purchasing a home or refinancing your present home. Here's the basic list:

- Last two years of tax returns- Federal only, lenders don't need State returns,
- Last two years W2's or 1099's
- One month's most recent paystubs
- Two months most recent bank statements, including checking, savings, investment accounts and retirement. We need ALL pages, even if blank,
- Copy of Driver's License

If you are self-employed or own a corporation, lenders would need two years corporate tax returns as well, including K1's. If you happen to own rental property, we would also need the lease agreement.

Essentially, if your situation is a bit more complicated than most, lenders will need a few more items to calculate income.

Normally, that's it! There is always the chance an underwriter may request additional documentation to show a paper trail of transactions or to better understand your circumstances, such as a closing settlement statement if you just sold your home.

(We need to show where that large deposit came from.)

If you are refinancing, lenders would also need a copy of your existing mortgage statement and current home insurance information.

Many lenders will complete the loan application for you, once you supply

the documentation,

(Personally,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Once it's complete, you will meet with your lender to sign the loan application and all the loan disclosures. Don't let this scare you, this takes 30 minutes and it's painless. At least it should be, assuming you're working with a mortgage advisor you trust.

Next, the lender will order the appraisal and send your loan package to underwriting. Once it's been underwritten, you will receive a list of conditions that the underwriter may request, if any.

Once you supply this information, the underwriter clears the loan for closing and we order loan docs!

You will typically meet with a notary from your escrow company to sign your final loan documents, and your loan is closed shortly after that! If you are refinancing, lenders are required to give you a three day right of rescission, so we wait 3 days once you have signed loan documents. That's it!

In normal market conditions, the entire process normally takes 30 days, from start to finish.

Personally, I'd pass on the root canal all day long over the loan process!





Grace Kang  
(Amstar Advisors)

## 은퇴계획에서 인덱스 연금활용

사람들이 은퇴를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고객은 재산증식을 위해 은퇴계획에서 가능한 빨리 자산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고객은 재정적 위험이 적은 성장잠재력을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견해를 바꿉니다. 연금은 은퇴계획 금융 플랜이기 때문에 고객은 종종 재정자문과 연금에 대해 함께 상담을 합니다. 연금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장기금융플랜입니다. 연금은 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는 은퇴를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IRA 나 401k 와 같은 세금공제자금(Qualified) 이나 CD 또는 비공제 개인자금(Non Qualified Fund) 을 연금에 저축할 경우, 모두에 대해 고객에게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계약이 연기단계에 있는 동안이나 자금이 계약에서 철회될 때까지는 세금 연기가 됩니다.

연금 (Annuity)의 종류

	세금연기	원금보장	수익성
Fixed Annuity (고정 연금)	√	√	
Fixed Indexed Annuity (고정 지수형 연금)	√	√	√
Variable Annuity (변동 연금)	√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동연금 (Variable Annuities, VA)에 익숙하며, 이 금액은 일일가격변동이 있는 자산 (Sub-accounts)으로 유지됩니다. VA는 주식시장의 수익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가치 위험을 고객이 갖고 보험회사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 비용과 함께 추가 옵션 (Rider) 을 구입하면 여러가지 보장혜택도 있습니다.

더 전통적인 유형의 연금은 고정연금 (Fixed Annuities, FA)으로, 이 금액은 보험회사의 일반회계계정에서 보유합니다. 고정연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의 자본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장위험이 없습니다. 고정연금이라는 이름의 "고정"은 계약의 현금가치의 원금 보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혜택을 받는 사람 외에 고객의 현금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현대적인 유형의 연금은 고정지수형연금 (Fixed Indexed Annuities, FIA)이며, 고객은 원금 보장 및 주식 시장 수익 가능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량주인 S&P 500 이나 나스닥 지수와 연계한 인덱스연금은 연간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현금가치를 보장하며 자금은 시장에 투자되지 않

으므로 시장위험이 없습니다. 모든 고객의 자금은 보험회사의 자본으로 뒷받침되는 보험일반계정에 남아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익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일부를 활용하는 인덱싱된 이자재산에 배분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안전하며 보장성있는 수입을 원합니다. FIA는 오늘날의 저금리와 2008년 주식 시장 하락 이후 점점 더 크게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정연금의 안정성과 변동연금의 수익가능성을 겸비한 FIA는 보너스와 함께 높은 퇴직소득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있어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세금연기혜택 외에도 사망시 법원검증절차면제(No Probate), 평생수익보장성 등 많은 혜택이 있으며, 예상치 않은 어떤 상황 에서도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연금플랜입니다. 저는 재정 설계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런 준비를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단, 연금은 장기플랜이며 59세 반 이전에 인출시나 계약 조기해약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산의 증식은 시간의 투자입니다.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은퇴플랜과 수혜자를 위한 유산상속플랜, 절세를 창출할 수 있는방법에 대해 가까운 회계사나 재정자문과 상의 하십시오.





**Kenny Ahn**  
 Human Resources Specialist

# Leadership

I've spent the last 20+ years starting, growing, merging, selling, and closing companies. These companies range from complete failures that never got past capital investment all the way to Fortune 100 companies whose stock values went from "uh-oh" to "I'm retiring, baby!" levels. Did I singlehandedly cause these? Of course not, I can't take the complete blame nor the credit for any of these. Having said that, I have walked away from these experiences with key learnings, most of which surround organizational process and leadership principles.

You see, I'm the guy that companies call when they feel the need to upsize, downsize, or outsize the competition. I'm not the one they call to help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s. In the next few moments, I want to share some of the things I've learned with you.

Too many business leaders feel that they can succeed as long as they have a good product without learning how to be a leader. That's like the average guy stepping into a race car at Daytona and hoping to compete against NASCAR drivers just because he has a good race car. You wouldn't simply pick up a good baseball bat and think you could hit Clayton Kershaw's curveball, would you? Then why do we think that having a good product, and then throwing people and rules at it will build a strong organization? As in the case of the baseball bat, you may swing blindly and hit Kershaw's curveball every now and then. But in the long run, you will be a miserable failure. It's the same with businesses.

You may be asking, "...yeah know-it-all, so what next then?" By no means do I know it all, but I do know that consumers don't merely buy products because they're good; consumers buy image. Consumers buy ideals. Consumers buy people. Consumers buy feelings. Could you imagine if you had employees accurately, helpfully, and enthusiastically represented your company to the public? This isn't nearly as utopian as you think. Sometimes great employees are found, or rather, taken from other companies. That's usually a combination of luck and a good recruiting budget. What's more consistent and less costly i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breeds great employees.

There's a long answer and a short answer to, "So then, how do I cre-

ate an environment that breeds great employees?" Long answer: Bring on a superstar HR executive and have him/her put together a comprehensive plan for you. Short answer: Fix your leadership.

I bet I lost some of you on that. Many of you reading this are part of the leadership in your company. You wouldn't want to indict yourself and your colleagues. So, I'll give some of you time to conjure up convenient reasons to leave and take care of emails ..... If you're still here, allow me to offer some insights which are neither incriminating nor horrifying.

In a recent Gallup Poll, 22% of all key employment terminations were caused by a company firing the employee. That means the other 78% quit. In other words, 78 out of 100 times when a key employee left the company, the employee fired the company. Sure, they'll tell you that they're moving for "a better opportunity," "family reasons," or something along those lines. But that's frequently code for, "I'd rather work somewhere else, so I'm firing my employer." This is a much longer conversation than what I can put neatly into a short article. So let me share with you few leadership styles that are prevalent in the workplace. See if you or your leadership colleagues can identify with any of these.



## Unpredictable Leader

- Employees see them as moody
- Frequently changes directions

Produces : Hesitant followers who work in fear and lack creativity

## Domineering Leader

- Leads by intimidation

- Wants immediate results with shortsightedness to long term destruction
  - Gains compliance but loses commitment of employees
- Produces : Compliant followers; "Yes" people

### Secretive Leader

- Chooses certain individuals over others to share insights into the company
  - Creates suspicion within the immediate staff
- Produces : Guarded followers who won't offer feedback

### Passive Leader

- Sees the problem but doesn't take measures to fix it
  - Doesn't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delegating and dumping assignments
- Produces : Disengaged followers who stop caring while processes become broken

### Healthy Leader

- Provides clear vision
- Listens and collaborates
- Actively gives credit to others
- Remains transparent and trusting

Produces : Faithful followers who want to sacrifice and give their best

### Empowering Leader

- Everything that a healthy leader does
- Tells employees to 'ask for forgiveness' NOT 'ask for permission'

Produces : Great l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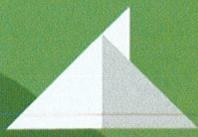
This is just one part of a holistic approach to creating a great company culture, but it's a big one. When I meet with clients or give talks at gatherings on leadership, I frequently get people coming up to me saying, "That was great! What you shared is perfect for a colleague of mine." Many times, the insight resonates with you, not because it's something for someone you know. Maybe it's for you.



Let's make good days together.

A good bank is like a good friend  
**PACIFICCITYBANK**  
[www.paccitybank.com](http://www.paccitybank.com)





National Life  
Group®

Experience Life®

Since 1848  
www.nationallifegroup.com

한인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시지 못한  
특별한 상품을 약속 드립니다.

“회계사님,  
제 회사는 순익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아주 큰데  
혹시, 세금 공제를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일반적인 은퇴플랜 정도의 대답 밖에 없다면  
여기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Linda Han

Senior Partner

Cell Phone 916.508.1787

CA Insurance Lic# OH56630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는  
여러 훌륭한 보험사와 보험 에이전트분들에  
의한 좋은 서비스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 **National Life Group**은  
회계사 여러분의 고객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Los Angeles Office  
3701 Wilshire Blvd., Suite 1122  
Los Angeles, CA 90010  
213.378.0026

San Francisco Office  
11501 Dublin Blvd., Suite 105  
Dublin, CA 94568  
925.452.8244



Worthington  
Financial Partners



Ann H. Lee  
공인회계사

# 트럼프 세제 개혁안

지난 30여년 이래 가장 큰 세금 개혁안인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이 2017년12월 22일에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트럼프 세제 개혁안은 현실화 되었다. 2018년 부터 2025년에 걸쳐 중산층 세금 혜택을 약속한 이 세제 개혁안은 개인 납세자들에게 어떤 변화로 다가오는지, 부부 공동 보고를 기준으로 일부 비교해본다.

	2017년			2018년			증감 %
	부부공동보고			부부공동보고			
	과세금액	세율		과세금액	세율		
INDIVIDUAL INCOME TAX RATE CHANGE 개인 소득 세율 변경	\$-	\$18,550.00	10.00%	\$-	\$19,050.00	10.00%	0.00%
	\$18,550.00	\$75,300.00	15.00%	\$19,050.00	\$77,400.00	12.00%	-3.00%
	\$75,300.00	\$151,900.00	25.00%	\$77,400.00	\$165,000.00	22.00%	-3.00%
	\$151,900.00	\$231,450.00	28.00%	\$165,000.00	\$315,000.00	24.00%	-4.00%
	\$231,450.00	\$413,350.00	33.00%	\$315,000.00	\$400,000.00	32.00%	-1.00%
	\$413,350.00	\$466,950.00	35.00%	\$400,000.00	\$600,000.00	35.00%	0.00%
	\$466,950.00	이상	39.60%	\$600,000.00	이상	37.00%	-2.60%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12,700.00			\$24,000.00			
PERSONAL EXEMPTION 개인공제	일인 당 \$4,050			폐지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	일인 당 \$1,000			일인 당 \$2,000로 인상			
FAMILY TAX CREDIT 비자녀 가족 세액 공제	해당없음			일인 당 \$500 로 신설			
SECTION 529 529 교육비 공제	대학 교육비 인출			초등 또는 중등 교육비로 학생당 \$10,000까지 인출 허용			
HOME MORTGAGE INTEREST 신규 주택 모기지 이자대상 부채	\$1,000,000 까지 공제가능			\$750,000 까지로 감소			
HOME EQUITY LOAN 홈 에퀴티 이자 대상 부채	\$100,000 까지 공제가능			폐지			
STATE /LOCAL INCOME & PROPERTY TAXES 주, 지방 정부 소득세와 재산세	공제가능			\$10,000 까지로 제한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공제가능			폐지 (일부 군인 제외)			
AFFORDABLE CARE ACT MANDAGE 오바마케어 벌금 조항	일인당 벌금 \$695			폐지			
CASUALTY LOSSES 산재	공제가능			대통령 선포 지역으로 제한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 자산 기부	수입의 50% 까지 공제가능			수입의 60%로 공제 범위 인상			
ALIMONY 위자료	지불 배우자에게 공제 처리, 수령 배우자에게 수입 처리			폐지			
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대체 세금 (개인)	\$83,800			\$109,400 으로 인상			
PASS THROUGH ENTITY BUSINESS BENEFIT 중소기업 혜택	해당없음			지격을 갖춘 개인, 동업, S-법인등의 순 사업소득의 20% 공제 신설			
ESTATE TAX EXCLUSION 상속세 면제 금액	\$5,490,000			\$10,000,000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이 크고 작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한 어떤것이 있는지 몇가지 살펴본다.

CORPORATE INCOME TAX RATE 법인 소득 세율 변경	15%~35%	21% 로 감세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법인 대체 세금	적용 대상	폐지
BUSINESS INTEREST DEDUCTION 사업 이자 공제	공제가능	사업 이자 소득, 조정후 소득의 30%, 그리고 납세자의 파이낸싱 이자등으로 제한 후, 무기한 이월 가능
NET OPERATING LOSS (NOL) 순 영업 손실	공제 및 2년 소급 적용 가능	공제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소득의 80%로 제한. 2년 소급적용 폐지 (농업제외)
1031 EXCHANGE SUBJECT PROPERTY 1031 교환자산 처리 대상	사업 또는 투자 자산	주로 판매를위해 보유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제한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국내 생산 활동	공제가능	폐지
ENTERTAINMENT EXPENSES 접대비	오락 활동, 즐거움, 사회적 클럽회비, 또는 이에 관련되어 사용된 시설의 사용비 공제	폐지
QUALIFIED TRANSPORTATION FRINGE BENEFITS 직원 교통편 제공	공제가능	폐지 (직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경우제외)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연구 실험비	경비처리가능	5년간 자본처리 및 감가상각
QUALIFIED EMPLOYEE EQUITY GRANTS 해당 직원 주식 보조금	소득세를 목적으로한 소득 연기 선택권 없음	30일 이내 소득 연기 선택 가능

# 2017- 2018 KACPA BUSINESS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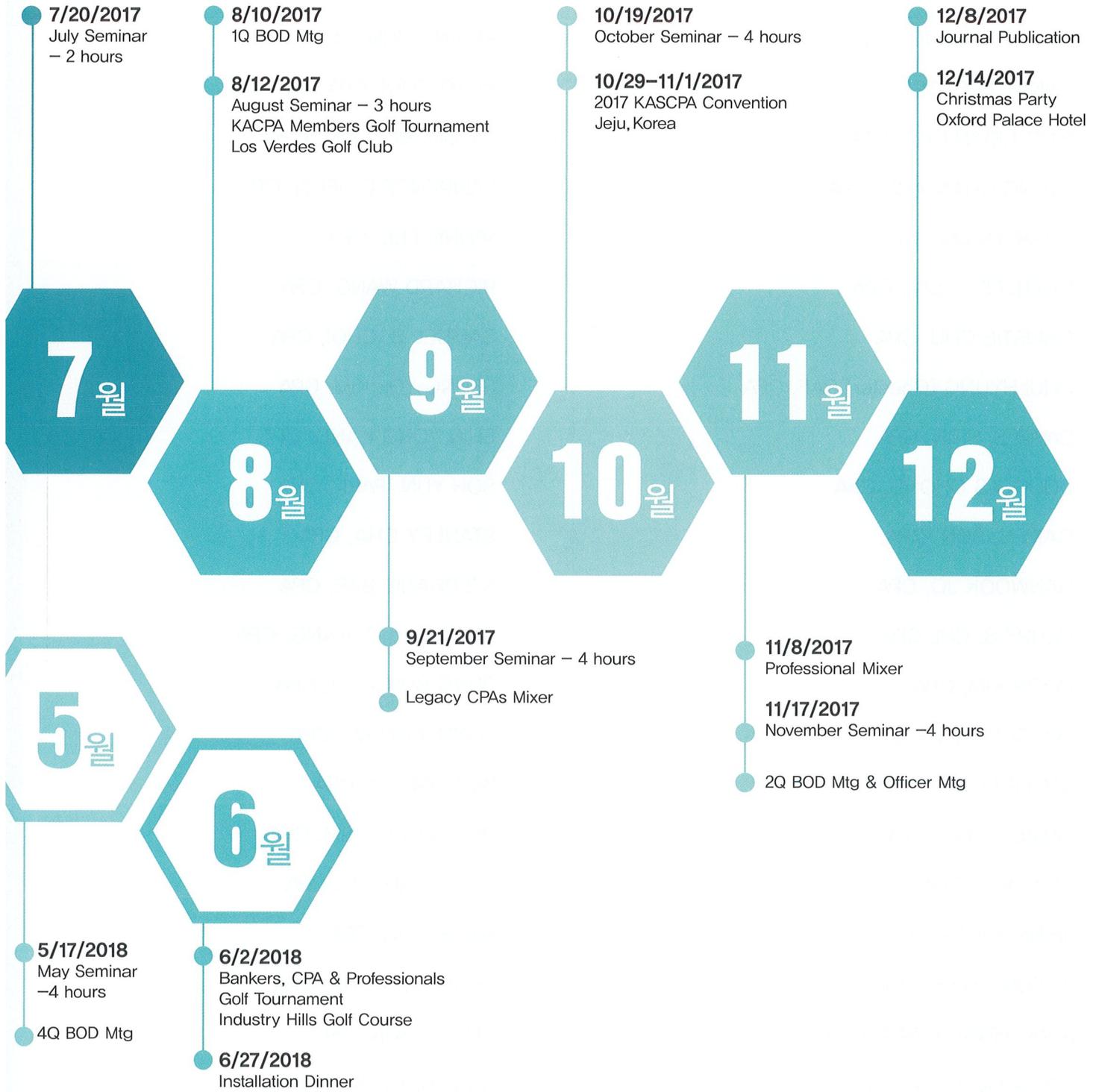
2017



2018



#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사업활동)



# KACPA Board of Directors List 2017-2018

ALBERT D. JANG, CPA

ALBERT J. JANG, CPA

ANN H. LEE, CPA

BIHO KEVIN CHA, CPA

BYUNG CHAN AHN, CPA

CHARLES LEE, CPA

CHARLES C. LIM, CPA

CHRISTIE CHU, CPA

CHULHYUNG (Chester) BAE, CPA

DAVID S. SHIN, CPA

DOUGLAS CHONG, CPA

GARY J. SON, CPA

HANWOOK JO, CPA

HENRY S. CHI, CPA

HOON KIM, CPA

JAE SUN SONG, CPA

JAMES M. CHA, CPA

JAMES Y. LEE, CPA

JANE KIM, CPA

JINNIE KANG, CPA

JINSUNG HAHN, CPA

JONG HWAN KWAK, CPA

JOONSOON CHOI, CPA

JUN CHANG, CPA

JUSTIN C. OH, CPA

KENNETH C. HAN, CPA

KEVIN CHUN, CPA

KI HO CHOI, CPA

KYUNG MOO KIM, CPA

LAWRENCE S. JEON, CPA

MINNIE LEE, CPA

RICHARD WANG, CPA

SAMUEL B. CHOI, CPA

SEUNG YOL KIM, CPA

SHIN YONG KANG, CPA

SOH YUN PARK, CPA

STANLEY CHA, CPA

STEPHANIE BAE, CPA

STEVEN Y. C. KANG, CPA

SUNG BUM CHO, CPA

TONG WON KO, CPA

WILLIAM KIM, CPA

WOHN CHUL KIM, CPA

YOON HAN KIM, CPA

MARK CHA, CPA

JAMES W.S. HAN, CPA

PHILLIP SON, CPA

SUN HYANG SHIN, CPA

SPENCER HONG, CPA

# 2017 - 2018 Officers (2017년 임원 명단)



*President*  
**Ann H. Lee**



*Vice President*  
**James Cha**



*Secretary*  
**Albert Jang**



*Treasurer*  
**Mark Cha**



*Seminar Director*  
**James W.S. Han**



*Seminar Director*  
**William Kim**



*Public Relations Director*  
**Hanwook Jo**



*Public Relations Director*  
**Phillip Son**



*Publications Director*  
**Charles Lee**



*Publications Director*  
**Sun Hayng Shin**



*Member Director*  
**Soh Yun Park**



*Member Director*  
**Spencer Hong**



*Communication Director*  
**Minnie Lee**

# 2017 - 2018 Committee Members



*Scholarship*  
**Andrew Kang**



*Scholarship*  
**Jun Chang**



*Scholarship*  
**Lawrence Jeon**



*Executive*  
**Byung Chan Ahn**



*Executive*  
**Christie Chu**



*Executive*  
**Gary Son**

# 35대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이취임식





## 장학금 전달식



# 2017 년 Bankers and CPAs Golf Tournament



#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Christmas Party



# 이사회



# Legacy Mixer



# Professional Mixer



# Seminar



모든 투자자가 불안한 상황!

Allianz 인덱스연금은 \*지수형 연금플랜이라  
안심 할 수 있습니다!



Allianz 222 평생연금  
15%보너스 지급  
No Fee

원금보장+세금연기+보너스까지



Index Annuity(인덱스 펀드연금)를 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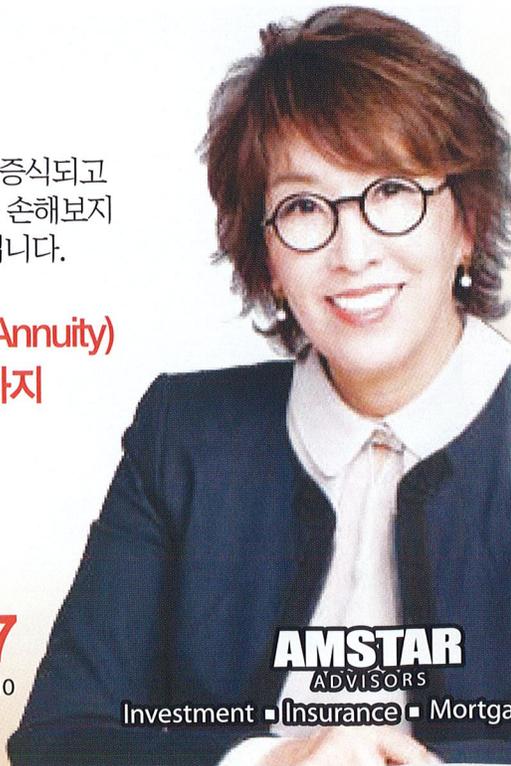
- 원금보장 ■ 세금연기 ■ 보너스 혜택 ■ 수익률 S&P 500 INDEX
- NO FEE ■ No PROBATION ■ Term: 5년 - 10년 (복리법)
- Fortune 500-세계최대회사 중 하나 ■ 등급: AA-Very Strong

**Allianz:**  
미국내 15년간  
Top #1 Sale

\* 지수형 연금플랜이란?

Index지수가 올라가면 고객의 구좌는 증식되고  
Index 지수가 내려가면 고객의 구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안전한 연금플랜입니다.

CD, IRA, SEP, 401K, 연금 (Annuity)  
Rollover 하셔서 up to 15%까지  
BONUS 혜택을 받으세요!



재정 상담 Grace Kang  
대표 CA Lic. #OC02747

직통 (213) 487-1477  
3600 Wilshire Blvd., #1614 Los Angeles, CA 90010  
gkangadvisor@gmail.com

**AMSTAR**  
ADVISORS  
Investment ■ Insurance ■ Mortga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가장 먼저 희망의 발자국을 찍습니다



한인은행 최초  
S&P 선정, 2016 Best-Performing Regional Bank (7위)

한인기업 최초  
2017 LPGA 타이틀 스폰서(LPGA Founders Cup)

한인은행 최초  
Forbes지 선정, 5년 연속 Best Banks in America\*  
\*BBCN Bank 포함

한인은행 최초  
Most Beautiful Brand Identities in Banking중 하나로 선정\*\*  
\*\*2016년 11월 The Financial Brand

한인은행 최초  
Super Regional Bank

한인은행의 모든 기록을 새롭게 쓰고있는 은행 -  
한국사람이 한국 밖에서 세운 가장 성공한 한인기업 -

**뱅크오브호프가 희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Bank of Hope**

Bankers. Experts. Neighbors.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재정계획을 열어주는 프리미엄 재정전문서비스

재정설계 / 은퇴연금 및 상속계획 / 보험  
기업상속 및 직원 베니핏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고객과 기업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신뢰성있게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재정 보험 전문인  
- 김종식 (Jon Kim)



## 36년동안 변함없이 재정관리 및 은퇴/상속계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은퇴계획 ▶ 상속계획 ▶ 리빙 트러스트 ▶ 기업상속 및 베니핏 프로그램 (401K, Pension Plan)
- ▶ 뮤추얼 펀드 투자 및 관리 ▶ 생명보험 ▶ 장기 간호보험 ▶ 장애소득보험
- ▶ 건강보험 ▶ 비영리 단체 기부(CRT) 및 절세계획 ▶ 대학 학자금 설계
- ▶ Special Needs Trust & Conservatorshi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52-6222 / Cell: (213) 792-9100  
Email: jonkim@financialguide.com  
<http://www.financialguide.com/jong-kim>



Fraser Financial Group

**김종식**  
Jongsik (Jon) Kim, FSCP, LUTCF, FSS, CLTC  
Financial Services Certified Professional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Certified in Long-Term Care  
Special Care Planner  
CA Lic.#0638640



Fraser Financial Group은 세계적 경영 다각화를 이루는 금융 서비스 그룹인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기업(매스뮤추얼)의 에이전시로서 광범위한 재정상품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매스뮤추얼의 기업목표는 재정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넓은 안목으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추어진 다양한 범위의 재정적 해결점을 오래도록 증진시키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입니다. 매스뮤추얼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재정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MassMutual Financial Group is a marketing name for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MassMutual)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and sales representatives.  
8383 Wilshire Blvd., Suite 600, Beverly Hills, CA 90211. (323)965-6300 Insurance offered through MassMutual and other fine companies.